

발 간 등 록 번 호

G000E11-2020-9



2020년 5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

제1장	총칙	3
제2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4
제3장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7
제4장	보칙	8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12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15
	(별표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1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9
	(별지 제1호 서식)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 요청서	38
	(별지 제2호 서식)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39
	(별지 제3호 서식) 교통사고 입원환자 퇴원 가능 소견서	40
	(별지 제4호 서식)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불가) 통보서	41
	(별지 제5호 서식)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안내문	42
	(별지 제6호 서식)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계획 및 환자동의서	43
	(별지 제7호 서식) 재활치료계획서	44
	(별지 제8호 서식) 재활심리상담(개인) 결과서	45
	(별지 제9호 서식) 자동차보험 재가적응훈련계획 및 동의서	46
	(별지 제10호 서식)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	47
	(별지 제11호 서식)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	52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관련 Q&A 안내	5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56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	5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65
------------------------------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81
제 1 절 치과보철	81
제 2 절 재활보조기구	84
제 9 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96
제12절 치료보조기구	97
제15절 재활치료료	98
제16절 냉각부하검사료	103



[응급의료수가기준]

응급의료수가기준	117
(별표 1)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	1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1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22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	12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장 총칙	127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131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156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162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167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199
제6장의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206
제7장 보칙	209
제8장 벌칙	227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231



2020년 5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정	1999. 9. 8.	고시	제1999-274호
개정	2013. 6. 28.	고시	제2013-391호
	2014. 8. 28.	고시	제2014-513호
	2015. 6. 1.	고시	제2015-356호
	2016. 6. 27.	고시	제2016-418호
	2017. 12. 26.	고시	제2017-990호
	2018. 10. 1.	고시	제2018-599호
	2019. 5. 8.	고시	제2019-225호
	2019. 7. 23.	고시	제2019-392호
	2019. 11. 4.	고시	제2019-612호
	2020. 5. 7.	고시	제2020-376호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보험”이란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를 말한다.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 “교통사고환자”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한다)로 말미암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란 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병(傷病: 부상으로 인한 제 증상을 말한다)을 진료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말한다.
6. “보험회사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
-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라 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2. 제1호의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이를 지급받을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변제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보험 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
3.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진료수가”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경우 및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게 그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4. 의료기관이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진료비의 납입을 청구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보험 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는 경우

제2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제 4 조(진료의 기준)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되, 그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 5 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 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 내역 및 기준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

② 제1항에서 정한 인정범위(이하 "건강보험기준"이라 한다)와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할 필요에 의하여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진료수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 다만, 제1절 치과보철의 [진료원칙] 중 제6호,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제10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제11절 이송료, 제14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제15절 재활치료료 중 제3호, 제18절 예방접종비용은 제외한다.

③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명시된 항목이 건강보험기준의 개정으로 새로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건강보험기준에 따른다.

⑤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시범재활치료를 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1. 사고 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치료 중인 환자로서 적극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2. 사고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부적절한 치료(전문재활치료를 중단한 경우 등)를 받은 환자로서 적극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제 6 조(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인정범위의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그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1.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傷病)에 대한 진료비. 다만, 해당 자동차사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의료기관

또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증상(“합병증”을 말한다)에 대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을 말한다)에 대한 진료비.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해당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2~3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에 해당하는 입원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입원하였을 때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

다. <삭제>

4. 교통사고환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퇴원 또는 전원(轉院)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 그 지시일의 다음 날부터 그 의료기관에서 입원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진료비. 다만, 퇴원 또는 전원 지시에 따라 통원치료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발생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교통사고환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 중 의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삭제>

제 8 조(진료수가의 산정방법) ① 제5조의 진료수가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산정하되, 제4호 및 제5호는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건강보험기준 중 상대가치점수, 금액이 정해진 행위·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정해진 약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3항제1호·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
 2.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조기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금액
 3. 제5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항목 및 제5조제5항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항목의 점수 및 금액
 4. 제1호 및 제3호에서 비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의 점수 및 금액
 5. 건강보험기준의 비급여대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는 해당 진료에 소요된 실제비용, 비급여로 정해진 치료재료 및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는 의료기관의 실구입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각 호의 인정범위 중 금액으로 정한 항목은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별도로 가산을 인정하는 항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개별 의료기관이 제5조의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금액 또는 실제 구입금액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산정한다.

제3장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제 9 조(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②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에는 그 내용·근거 및 진료비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명이 없거나, 소명된

내용·근거 및 진료비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의 진료비는 교통사고환자 진료비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진료비
2. 별표 1에 명시된 진료항목(종별가산율 및 입원료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비중 건강보험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비

제10조(진료기록의 확인청구) ① 보험회사등은 진료수가 지급을 위하여 관계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확인청구 내용이 진료에 관한 사실확인 및 진료수가 지급에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은 관계 진료기록의 일부만을 확인하게 하거나 그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4장 보칙

제12조(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등) ① 의료기관은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의학적으로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통사고환자에게 퇴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보호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의 지급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새로운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후 또는 교통사고환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보증증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문서교환방식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심의회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방식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 등의 통지
2.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의 철회
3. 법 제14조제1항 및 이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관계 진료기록의 확인청구 및 그 확인청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험회사등에 대한 의사표시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심의회에 대한 심사청구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사청구 당사자에 대한 결정내용의 통지
6.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결정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수락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
7. 법 제22조에 따라 심의회의 관계자에 대한 의견 등의 수집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심의회가 제1항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 따라 통지 등을 행한 경우에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391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4-513호, 2014. 8. 28.〉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356호, 2015. 6. 1.〉

이 고시는 2015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418호, 2016. 6.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990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599호, 2018. 10.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 키-3 수면 다윈 검사, 오-6 기타 행동치료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225호, 2019. 5.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92호, 2019. 7.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12호, 2019. 11.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 요양병원 항목 신설 규정 및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한 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0-376호, 2020. 5.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삭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검사료] 중 분류번호 노-371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삭제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원료 항목 신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연번 24 입원료 신설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관련)

대분류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
일반사항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1편 제1부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항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가산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목은 45% 2. 나목은 37% 3. 다목은 21% 4. 라목은 15%
제1장 기본진료료	[입원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2.입원료 등 라. (5) 및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입원료(가-2)는 입원 5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입원 151일째부터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2. 종합병원의 입원료(가-2)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를 산정한다. 3.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가-2, 가-9가~다)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에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제5장 주사료	[주사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는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4회 이내만 산정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액제 주입료를 통한 주사(마-5-1)는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4회 이내만 산정한다.
제7장 이학요법료	[이학요법료] 표층열치료(사-101), 한냉치료(사-101-1), 경피적전기자극치료(사-104), 간섭파전류치료(사-104의 '주')는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대분류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처치 및 수술료 등] 안면 또는 경부에 대하여 창상봉합술(자-2-가)을 시행한 경우에는 1회의 시술에 한하여 별도로 50,000원을 산정한다.(키-9, VI010) [처치 및 수술료 등]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자-24 반흔구축성형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자-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는 다음의 키-10 반흔구축성형술, 키-1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키-14 레이저 반흔성형술로 산정한다. 키-10 반흔구축성형술 Release of Scar Contracture 주: 1. 운동제한유무와 관계없이 산정한다. 2. 안면성형술시 사용된 봉합사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3. Z-plasty 혹은 W-plasty 등 국소피판에 해당하는 피부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시술전 반흔 길이의 1.5배를 산정한다. 가. 안면(cm당) (1) 상급종합병원 100,000원(VI021) (2) 종합병원 80,000원(VI022) (3) 병원 70,000원(VI023) (4) 의원 60,000원(VI024) 나. 기타부위(cm당) (1) 상급종합병원 70,000원(VI031) (2) 종합병원 60,000원(VI032) (3) 병원 50,000원(VI033) (4) 의원 40,000원(VI034) 키-1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Autogenous Fat Graft or Dermo-Fat Graft 주: 2부위 이상 시술시 이식한 부위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가. 4cm² 미만 511,800원(VI041) 나. 4cm² 이상~16cm² 미만 716,520원(VI042) 다. 16cm² 이상~36cm² 미만 921,240원(VI043) 라. 36cm² 이상~100cm² 미만 1,535,400원(VI044) 마. 100cm² 이상 2,047,200원(VI045)

대분류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
	키-14 레이저 반흔성형술 주: 2부위 이상 시술시 면적을 합산하며, 레이저 종류를 불문하고 산정한다. 가. 0~25cm² 미만 153,540원(VI071) 나. 25cm² 이상~100cm² 미만 255,900원(VI072) 다. 100cm² 이상 358,260원(VI073)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시술료] 온냉경락요법(하-70)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응급의료기준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수가기준」의 2.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등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키-1		[입 원 료]		
	VA011 (90011)	상급병실료 가. 1인실		실제소요 비용 (기본입원 료와의 차액)
	VA012 (90012)	나. 2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 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제외]		
	VA013 (90013)	다. 3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 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제외]		
		[검 사 료]		
노-671	FZ671	후각기능검사 가. 인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0,710
		나. 역치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40,940
노-697	FZ697	단섬유근전도 가. 상급종합병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50,000
		나. 종합병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47,000
		다. 병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43,000
		라. 의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41,000
노-731	FZ731	동적체평형검사 Dynamic Posturography 주 : 치료기간 중 1회 산정한다.		30,710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노-732	FZ732	회전검사 Rotatory Chair Test	2,444.00	
노-733	FZ733	비디오전기안진검사 Video-Nystagmography 주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나-633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9'로 기재)		
노-775	EZ775	관절계를 이용한 무릎관절인대검사		20,470
노-776		체온열검사 Thermography(전신) 주 : 부위별 수가는 전신의 60%를 산정한다.		
	VB021~ VB024 (91021 ~91024)			
	VB011 (91011)	가. 상급종합병원		117,510
	VB012 (91012)	나. 종합병원		95,710
	VB013 (91013)	다. 병원		92,120
	VB014 (91014)	라. 의원		92,120
카-3		수면 다원 검사 주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나-629 수면다원검사'의 급여기준(검사항목, 시설기준, 실시 인력기준, 인정횟수)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나-629 수면다원검사로 산정한다. 2. 교통사고환자에게 수면다원검사(나-629, 카-3)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VB051	(1) 상급종합병원		350,000
	VB052	(2) 종합병원		330,000
	VB053	(3) 병원		300,000
	VB054	(4) 의원		280,000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키-4		음경기능진단 주 : 수면중 발기검사, 시청각 성자극 발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가. 주간 VB071 (1) 상급종합병원 80,000 VB072 (2) 종합병원 75,000 VB073 (3) 병원 69,000 VB074 (4) 의원 65,000 나. 야간 VB081 (1) 상급종합병원 100,000 VB082 (2) 종합병원 94,000 VB083 (3) 병원 86,000 VB084 (4) 의원 82,00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키-5		X-Ray 필름 복사(매당) 가. 상급종합병원 4,000 나. 종합병원 3,700 다. 병원 3,400 라. 의원 3,200		
키-24	VC040	영상진단 저장매체 복사수수료(개당) 주 : 1. CD 등 저장매체 종류에 불문하고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2.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 진료상 필요하여 복사한 경우 산정한다. [정신요법료]		10,000
오-5	NZ005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 Reprocessing Therapy		102,360
오-6		기타 행동치료 Other Behavioral Therapies 주: 전문의 또는 전문의 지도하에 3년차 이상 전공의가 1인의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NZ008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치료를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 부 제8장 아-6가. 인지행동치료-개인의 소정점수를 산정한 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가. 정신신체적 생체피드백 치료 Psychophysiological Biofeedback		20,470
	NZ009	나. 신경발달중재치료 Neurodevelopmental Intervention Therapy		20,470
	NZ010	다.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Psychological Rehabilitative Intervention Therapy		20,470
조-83	[처치 및 수술료]			
	SZ083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 Intra 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주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소정점수에 25%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용” 중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카-12	VI051	비성형술 Corrective Rhinoplasty 가. 소 주 : 한쪽만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2,047,200
	VI052	나. 중 주 : 양쪽(4군데 이하)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2,354,280
	VI053	다. 대 주 : 5군데 이상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2,866,080
카-13	융비술 Augmentation			
	VI061	가. 소 주 : 인공이식만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023,600
	VI062	나. 중 주 : 인공이식과 자가조직이식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535,400
	VI063	다. 대 주 : 연골이나 자가조직이식과 더불어 비첨부성형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047,200
카-15	VI080	조직확장기 삽입술 주 : 1. 소정금액에는 조직확장기 삽입술 및 확장유도술의		1,023,600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카-23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사용된 조직확장기는 별도 산정한다.		
		모발이식술[모발분리비 포함]		
	VI094	주 : 500모 미만 시술시 1모당 2,500원을 산정한다.		
	VI091	가. 500모 ~ 1,000모 미만		2,400,000
	VI092	나. 1,000모 ~ 2,000모 미만		4,500,000
	VI093	다. 2,000모 이상		6,600,000
		[치과 처치·수술료]		
카-26	VJ010	완전도재전장관 All Ceramic Crown 주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1절 [치과 보철료] 중 '카-3 도재전장구조관(귀금속)'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진료원칙] 및 [보철원칙]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초-42	UZ042	교합안정장치	8,555.92	
		[한방 투약 및 조제료]		
바-1	13010	한방 첩약(1첩당) 주 :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하여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6,690
바-2	13020	한방 탕전료(1첩당)		670
카-100		한방 관련 의약품 주 :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실구입가
	92011	가. 복합엑스제		
	92012	나. 한방파스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하-1	93011	[한방 시술 및 치료] 약침술 주 : 1. 사용된 약제는 시술부위 불문하고 1회당 2,000원으로 산정한다. 2.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97.47	
	93013			
	93012			
		[기 타]		
카-16	VM010	Bobath sling		30,710
카-17	VM020	Shoe strap(foot plate)		23,030
카-18	VM030	Shoe elevation		23,540
카-19	VM040	Safety Walking Belt		51,180
카-20		사후처치		
	VM051 (97011)	가. 상급종합병원		20,000
	VM052 (97012)	나. 종합병원		18,000
	VM053 (97013)	다. 병원, 한방병원		17,000
	VM054 (97014)	라. 의원, 한의원		16,000
카-21		슬링 sling		실구입가
	VM061	가. 팔걸이 arm sling		
	VM062	나. 쇄골밴드, 8자형 밴드		
카-22	VM070	캐스트 신발 cast or splint shoe		실구입가

주: 행위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분류항목의 소정점수(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 제3항 관련)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1	일반사항	진료수가(행위) 인정범위	1.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행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목록에 등재(고시)되어 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함. 2. 건강보험기준에서 비급여로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에 대체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진료수가(약제) 인정범위	1.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는 약사법령에 의한 허가·신고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함. 2. 이 경우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약제를 우선 인정하고, 등재되지 않은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이 가능한 약제로서 등재된 약제 중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3		진료수가 (치료재료) 인정범위	1.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약사법 및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함. 2. 이 경우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인정하고, 비급여대상으로 정해진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중 대체가능한 치료재료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3. 건강보험기준에서 인정범위 등이 별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상 중분류의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환자 진료상 불가피하게 사용 용도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함.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4		진료수가 (신의료기술 등) 인정범위	1.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신의료기술 등)를 자동차사고환자에게 시행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서가 접수된 행위·치료재료로서, 건강보험기준 중 대체 가능한 행위·치료재료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인정함. 2.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가격(행위는 실제비용, 치료재료는 실구입가)을 기재한 비용산정 목록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5		건강보험기준 중 전액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인정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기준 중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음.
6	〈삭제〉	〈삭제〉	〈삭제〉
7	입원료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및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연번에서 같다)의 2~3인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입원당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입원료(건강보험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에 따른 금액 포함)를 산정하되,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병실의 사용이 부득이한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불필요한 병실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의 2~3인실 산정기준	
8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방법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자동차보험 적용일로부터 적용함.
9	의약품 관리료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 산정방법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는 자동차보험 적용일을 시점으로 하여 해당 소정점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10	이학 요법료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인원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물리치료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함. 다만, 상근물리치료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의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물리치료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총 물리치료 청구건수(물리치료 실시 연인원)÷1개월간(1주일간) 물리치료사 근무일수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11	한방 물리요법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한의사 1인 당 1일 한방물리 요법 실시인원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0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요법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 연인원)÷1개월 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12	입원료	입원료 심사기준	1.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료기록부상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인정함. 2.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하여야 함. - 환자가 퇴원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퇴원 또는 전원 소견을 보험회사등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3호 서식) 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퇴원 및 전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에서 통지된 퇴원 또는 전원 가능 소견서 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여부를 회신하 여야 함.(별지 제4호 서식) - 심사기관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퇴원 또는 전원 가능소견을 통지 받고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를 회신하기 전까지의 입원료와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를 회신하지 아니 한 경우의 입원료는 인정하여야 함. 3.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시 입원료는 산정가능하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함. 이 때 병원관리료 산정방법 은 건강보험 입원환자 외박시 병원관리료 산정방법과 동일함. 또한 입원중인 환자가 무단으로 외출, 외박하는 경우에는 무단 외출, 외박일 이후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13	진료수가 제외대상	진료비 처리방법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및 교통사고환자가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을 말한다)의 진료비에 대하여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 보험회사등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됨’을 서면으로 안내(별지 제5호 서식) - 의료기관은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비 구분하여 청구 - 심사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진료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를 인정함
14	처치 및 수술료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 시술시 수가 산정방법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제5조)내에서 모든 수술료에 대하여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또는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또는 금액)의 5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해당수술 소정점수(또는 금액)의 70%를 산정함. 다만,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또는 금액)만 산정함
15	요양병원	기왕증이 있는 자동차사고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시 환자분류군별 정액수가 및 기왕증 비용 산정방법	1.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1) 기왕증이 악화된 상태를 반영하여 환자분류군별 정액수가 산정 (2) 기왕증에 대한 비용은 환자분류군별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별도 산정 불가 2. 기왕증이 악화되지 않은 경우 (1) 기왕증이 환자분류군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 기왕증을 제외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환자상태로 환자분류군별 정액수가 산정 - 환자분류군별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기왕증 비용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청구 가능 (2) 기왕증이 환자분류군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기왕증을 포함하여 환자분류군별 정액수가 산정 - 기왕증에 대한 비용은 환자분류군별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별도 산정 불가
16	치아보철	치아보철비 산정기준	치아보철비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17	시범재활 치료	대상자 선정절차	1. 제5조제5항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시범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에게 시범재활치료에 대해 설명한 후 '시범재활치료계획 및 환자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고, 7일 이내에 지급의사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에게 제출한다. 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를 통보받은 보험회사등은 의료재활시설이 심사기관으로 해당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 해당 환자가 시범재활치료 대상자임을 심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3. 시범재활치료 대상자의 시범재활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시범재활치료계획 및 환자동의서'에 현재의 환자 상태,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기재하여 시범재활치료 기간이 종료되기 7일전까지 보험회사등에게 제출한다.
18	시범재활 치료	재가적응훈련관 대상자 선정절차	1. 제5조제5항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독립적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이 완벽하지 못하여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재가적응훈련관에서 실시하는 특수재활치료에 대해 설명한 후 '자동차보험 재가적응훈련계획 및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고, 7일 이내에 지급의사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에게 제출한다. 2. 재가적응훈련 대상자를 통보받은 보험회사등은 의료재활시설이 심사기관으로 해당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 해당 환자가 재가적응훈련관에서 실시하는 특수재활치료 대상자임을 심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19	입원환자 식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식 영양 관리료 적용기준	1.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그 외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기준, 영양사 인력 산정 기준 및 현황 통보 기준은 건강보험기준을 적용한다.
20	추나요법	교통 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	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한 경우 인정함.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 다 음 - 가. 인정 횟수: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 의료기관은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나. 복잡추나 인정 질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 50%에 해당하는 상병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추나 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 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추나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8명까지 인정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 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9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추나요법 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추나요법 청구건수(추나요법 실시 연인원) ÷ 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21	요양병원	지역사회연계료 산정방법 등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이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입퇴원 일시 등의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요-56)는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별지 제10호 서식], 요양병원 퇴원 지원 표준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연계내역(연계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작성하여 진료수가 산정시 반드시 심사참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함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22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가정전문 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가정간호 방문 횟수(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 는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7회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가정간호 방문횟수 = 1개월간(1주일간) 총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건수 ÷ 1개월간(1주일간)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일수의 합																				
23	요양병원	요양병원 입원 중 인 산정특례 대상 자를 다른 의료기 관에 산정특례 대 상 상병으로 진료 의뢰 시 수가산정 방법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를 치료하 는 과정에서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 경우 수가 산정대상 및 산정방법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내역 및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진료의뢰를 받은 의료기관과 의뢰한 요양병원은 진료비 청구 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예 관한 규정」에 의하여 특정내역 구분코드(MT063)를 작성하여 청구함																				
24	입원료	상급종합병원·중 합병원·병원·한방 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일수 에 따른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 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 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입원일수</th><th colspan="2">본인일부부담금</th></tr> <tr> <th>2인실</th><th>3인실</th></tr> </thead> <tbody> <tr> <td>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td><td>무관</td><td colspan="2">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건강보험 에서 정한 입원일수(1일~15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td></tr> <tr> <td rowspan="3">병원· 한방병원</td><td>1일~50일</td><td colspan="2">1일째 입원일부터 5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 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수(1일 ~15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td></tr> <tr> <td>51일~150일</td><td colspan="2">51일째 입원일부터 150일째 입원일까지 의 입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 수(16일~30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의 부담률</td></tr> <tr> <td>151일 이상</td><td colspan="2">15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건강보 험에서 정한 입원일수(31일 이상)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td></tr> </tbody> </table>	구분	입원일수	본인일부부담금		2인실	3인실	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	무관	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건강보험 에서 정한 입원일수(1일~15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병원· 한방병원	1일~50일	1일째 입원일부터 5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 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수(1일 ~15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51일~150일	51일째 입원일부터 150일째 입원일까지 의 입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 수(16일~30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의 부담률		151일 이상	15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건강보 험에서 정한 입원일수(31일 이상)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구분	입원일수	본인일부부담금																					
		2인실	3인실																				
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	무관	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건강보험 에서 정한 입원일수(1일~15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병원· 한방병원	1일~50일	1일째 입원일부터 5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 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수(1일 ~15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51일~150일	51일째 입원일부터 150일째 입원일까지 의 입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 수(16일~30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의 부담률																					
	151일 이상	15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건강보 험에서 정한 입원일수(31일 이상)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 제5항 관련)**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 (주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본진료료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전문재활치료 팀 회의료 Team Conference of Medical Rehabilitation 주 : 1.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전문재활치료팀이 회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되, 팀 회의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팀 회의는 담당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하며,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평가내용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치료목표와 연결되는 재활치료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3.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하며, 최초 팀회의는 전문재활치료 시작 이후 2주 이내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91501	가. 최초	26,910
91502	나. 2회째부터	17,940
91503	특수재활입원료[1일당] 주 : 1.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독립적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이 완벽하지 못하여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재가적응훈련관에서 실시하는 특수재활치료에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7일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2.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사-125 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4] 1. (3)이학요법료 재활로봇 보행치료(91212)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가-2 입원료, 키-1 상급병실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12,430

(2) 검사료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주 : 1. 상근하는 재활의학과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뇌졸중상지기능평가는 제외)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작업치료사는 뇌졸중상지기능평가에 한함)가 해당검사(평가)를 실시하고 검사(평가)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약제, 판독료 및 그 밖의 재료대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91109	척수손상보행평가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njury(WISCI) 주 : 1. 척수손상으로 보행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5분 이상 표준화된 평가도구(WISCI 등)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3. 같은날 10미터 걷는 동안 속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12,310
91110	뇌졸중상지기능평가 Manual Function Test(MFT) 주 : 1. 뇌손상 환자의 조기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20분 이상(양측) 표준화된 평가 도구(MFT)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24,620
91401	수중운동평가 Assessment for the Aquatic Physical Therapy 주 : 수중운동치료 대상자에 대하여 운동처방실에서 물리치료사가 검사를 실시하고 의사가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산정한다.	37,310

(3) 이학요법료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주 :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91202	집단운동치료 Group Therapeutic Exercise 주 : 1. 의사, 재활간호사(전문재활치료팀 구성원으로서 팀 회의에 참여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이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한 공간(면적 : 82.645㎡ 이상)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환자에게 40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운동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또는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3.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6,920
91203	집단상담 Group Social Work Counselling 주 : 1. 집중재활치료 대상자 중 사회사업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가 2인 이상의 환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45분 이상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주 2회 이내로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6회 이내로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8나 사회사업상담 또는 재활심리 상담-개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10,030
91211	재활심리상담-개인 Psychological Counselling in Medical Rehabilitation 주 : 1.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20~40분 이상 문제와 갈등의 원인 해결을 위한 정서적 지지 및 재활치료 동기부여 등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재활심리상담 결과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3.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8나 사회사업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8,990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91212	재활로봇 보행치료 Rehabilitation Robotic Gait Training 주 : 재활로봇 시스템을 이용하여 근육이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나 운동장애 (뇌손상, 척수손상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과 말초신경손상, 근골격계 손상 등) 환자를 대상으로 보행훈련을 30분이상 시행한 경우 1일 1회 산정한다.	70,910
91213	운전재활 Driver Rehabilitation 주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업치료사의 지도하에 장애인용 운전재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인지능력 및 운동능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30분 이상 훈련을 시행한 경우 1일 1회 산정한다.	24,990
91214	앉은자세 평가 및 훈련 Sitting Position Evaluation and Education 주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pressure mapping finding을 평가하여 앉은자세평가지를 작성·비치하고 앉은자세 교육 및 방석처방을 실시한 경우 월1회 산정한다.	35,970

(4) 수중운동치료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주 :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수중운동치료는 수중운동치료 교육과정을 이수한 물리치료사에 한함)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대기중에서는 체중부하가 곤란하여 수중에서 근력강화 및 유연성 등의 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91402	수중운동치료-개인 Aquatic Physical Therapy-Individual 주 : 1. 중추신경계손상 및 질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 보행이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53,460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91403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30분 이상) 주 : 1. 근육과 관절의 구축이나 강직, 근육이완, 근력강화 등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치료사가 2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35,140
91404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60분 이상) 주 : 1. 근육과 관절의 구축이나 강직, 근육이완, 근력강화 등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치료사가 2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하고, 이후 해당 물리치료사의 관리·감독 하에 환자 스스로 전신 지구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70,280

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하는 재활프로그램 (주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검사료

분류코드	분 류	금액(원)
	주 : 1. 근골격계 손상 또는 질환 등으로 재활프로그램의 효과가 기대되는 환자에게 평가를 목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평가는 부위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어깨 및 상지·수부·하지 평가를 양측으로 각각 실시한 경우 제2부위부터는 소정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하고 허리 평가의 경우 척추 전체를 하나의 부위로 본다.	
	집중재활프로그램 다차원 평가 주 : 1. 근골격계 손상 또는 질환으로 집중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평가는 집중재활프로그램 다차원평가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91157	가. 다차원 어깨 및 상지 평가	78,530
91162	나. 다차원 수부 평가	130,100
91163	다. 다차원 허리 평가	78,250
91165	라. 다차원 하지 평가	80,570
91156	운전능력 평가 Driving Ability Evaluation 주 : 운전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인지, 시지각 및 신체적 운전능력에 대한 평가를 운전재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42,790

(2) 이학요법료

분류코드	분 류	금액(원)
	주 : 해당항목의 물리·작업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근골격계 집중재활프로그램 Musculoskelatal Intensive Rehabilitation Program 주 : 1. 집중 재활프로그램은 1:1 수기치료 또는 전담재활치료를 최소 50%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어깨 및 상지·허리·하지 집중재활프로그램은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운동치료(사-106, 사-116)와 같은 날 실시하더라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수부 집중재활프로그램은 작업치료(사-123)와 같은 날 실시하더라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집중재활프로그램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입원은 1일 2회, 통원은 1일 1회 산정한다.	
91605	가. 어깨 및 상지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34,910
91606	나. 수부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27,230
91607	다. 허리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33,100
91608	라. 하지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24,980

3.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적용하는 건강보험기준 완화 항목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가-2 입원료 해당 점수의 100%에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하여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신경계 질환에만 월 2회 이내 산정하되, 정신기능, 뇌신경운동 기능, 지각기능, 반사자율신경계 및 자세, 보행, 실화 등을 순서로 전 신체 신경부위에 대하여 시행하였을 경우 산정
나-661	도수근력검사 (Manual Muscle Test)	월 2회 이내 산정
너-771	일상생활동작검사 (Activities of Daily Living Test)	1. 월 2회 이내 산정 2.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 척수신경 평가도구(SCIM)를 이용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 다.(EY772)
너-772	수지기능검사 (Hand Functional Test)	1. 월 2회이내 산정 2. 쥘스수부평가검사와 오코너 핑거 텍스트리티검사는 검사내용이 다르므로 각각 산정 3. 양측은 별도 산정(병변이 있는 경우)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 (Range of Motion Test)	1. 월 2회 이내 산정 2. 같은날 여러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 하지, 수부 3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하되 양측 병변이 있는 경우 각각 산정
사-105	마사지치료 [1일당] (Massage Therapy)	1. 상지·하지 관련 상병으로 인한 관절구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 2. 수기로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사-106	단순운동치료 [1일당] (Simple Therapeutic Exercise)	1. 입원은 1일 2회, 외래는 1일 1회 산정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집단운동치료 또는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산정
사-116	운동치료 [1일당] (Therapeutic Exercise)	1. 입원은 1일 2회, 외래는 1일 1회 산정 2. 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등척성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하고 전산화된 정량적 평가결과지를 비치한 경우에도 '등속성 운동치료'로 산정 3.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집단운동치료 또는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산정
사-130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또는 제2절 사-116 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각각 인정
사-121	풀치료 [1일당] (Pool Therapy)	1. 보행풀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대기 중에서 체중부하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 2. 같은 날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
사-128나	사회사업상담 (Social Work Counselling)	1. 주 1회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3회이내만 산정 2. 같은날 집단상담 또는 재활심리상담-개인을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산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8. 28.>

지급보증 중지번호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수 신 : ○○병(의)원장 귀하

제 목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1. 귀 의료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다음 교통사고 환자는 우리 회사(조합)와 합의가 성립되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환자 성명	(남 여)
환자 생년월일	
지급보증번호	
지급보증 중지일자	20 년 월 일
특이사항	

20 년 월 일

○○보험주식회사 ○○센터장 (인)

주소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 8. 28.〉

문서번호 : 교통사고 입원환자 퇴원 가능 소견서							
수 신 : ○○보험 주식회사 (공제조합) ○○ 보상팀장(보상사무소장) 귀하 주 소 : 제 목 : 교통사고 입원환자 퇴원 가능 소견서 제출							
1. 귀 사(조합)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지급보증한 교통사고입원환자에 대하여 진료한 결과, 의학적인 판단상 우리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귀 사(조합)가 이 통지를 받은 이후 별도의 지급보증 중지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입원진료비는 지급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하겠으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환 자 명: 나. 환자 생년월일: (남, 여) 다. 주요 진단명 : 라. 향후 치료 방법에 대한 소견 : (“치료종료”, “통원”, “타의료기관으로의 전원입원” 중 하나를 기재) 마. 특기사항 : (환자의 퇴원가능 사유, 현 증상 및 상태, 향후 치료내용, 형태 등을 기술) 끝. 20 년 월 일 주치의 : ○○○ (면허번호 :) (서명) ○○ 병(의)원 원장 ○○○ (인) 주소 :							
도달 증명	1. 직접전달, 팩스전송	수령일시		수령인명		수령인서명	
	2. 등기우편	등기번호 : ○○ 우체국 20 년 월 일 제 호					
	3. 내용증명	우체국 접수증명인으로 대체					
※ 비 고 : 동 서식은 2매 1조로 작성하여 1부는 의료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보험회사 등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보관용에는 반드시 도달증명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하며, 심사평가원에 진료수가 청구시 제출합니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4. 8. 28.>

문서번호 :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불가) 통보서							
수 신 : ○○ 병(의)원장 귀하 주 소 : 제 목 : 입원(식대 포함)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불가) 통보서							
1. 귀 의료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의료기관에 입원한 다음 교통사고환자의 경우 (이전 진료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아 통원진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제출되었던 바 우리 회사(조합)는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는 그 지급을 보증하고 다만, 입원료 및 식대에 대하여는 지급 보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환 자 명 : 환자 생년월일 : (남, 여) 20 년 월 일 ○○보험주식회사 ○○ 센터장 (인) 주소 :							
도 달 증 명	1. 직접전달, 팩스전송	수령일시		수령인명		수령인서명	
	2. 등기우편	등기번호: ○○ 우체국 20 년 월 일 제 호					
	3. 내용증명	우체국 접수증명인으로 대체					
※ 비 고 : 동 서식은 2매 1조로 작성하여 1부는 보험회사등이 보관하고 1부는 의료기관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등 보관용에는 반드시 도달증명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등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청구내역 통보를 받으면 2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4. 8. 28.〉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안내문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귀하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리되는 진료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 다 음 -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고, 기존질병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됩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기존 질병 및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이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3. 다만, 기존질병이라고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 또는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 관련규정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2.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

손해보험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 의사협회

(담당자: ○○ 화재(공제), ○○○, 전화 -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4. 8. 28.>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계획 및 환자동의서

1. 일반사항 및 상태조건

① 성명: ☐ 남 ☐ 여		② 생년월일: 년 월 일		③ 지급보증번호:	
④ 사고일자: 년 월 일		⑤ 입(내)원일자: 년 월 일			
⑥ 주소:					
⑦ 입(내)원사유:					
⑧ 상병코드 및 상병명(주/부/파생은 주상병, 부상병, 파생상병을 의미하며 상병코드는 KCD-6에 의거 작성)					
주/부/파생	상병코드	상병명	치료유무	주/부/파생	상병코드
⑨ 주요검사 ☐ 없음 ☐ X-ray ☐ MRI ☐ CT ☐ 초음파 ☐ 근전도·신경전도 ☐ 관절경 ☐ 적외선체열검사 (모두표시) ☐ 정신상태검사 ☐ 심리학적검사 ☐ Bone scan ☐ 기타()					
⑩ 주요검사 결과 요약					
⑪ 주요장애:					
⑫ 주요 활동한계:					
⑬ 신체부위 마비정도[신경손상 환자에 대해 수행]			⑭ 신체기능자립도[입원환자 및 중등도 신경손상환자에 대해 수행]		
마비부위	☐ 없음 ☐ 좌상지 ☐ 좌하지 ☐ 우상지 ☐ 우하지		A D L	옷 벗고 입기	☐ 완전자립 ☐ 부분도움 ☐ 완전도움
측정일자 (가장 최근일)	우 측 좌 측 상지 하지 상지 하지			세수 하기	☐ 완전자립 ☐ 부분도움 ☐ 완전도움
				식사하기	☐ 완전자립 ☐ 부분도움 ☐ 완전도움
				화장실사용하기	☐ 완전자립 ☐ 부분도움 ☐ 완전도움
				일어나 앉기	☐ 완전자립 ☐ 부분도움 ☐ 완전도움
년 월 일			이동하기	☐ 완전자립 ☐ 부분도움 ☐ 완전도움	
G5(Normal): 충분한 저항을 이겨내고 완전운동범위 수행 G4(Good): 약간의 저항 이겨내고 완전운동범위 수행 G3(Fair): 중력 이겨내고 완전운동범위 수행가능 G2(Poor): 중력 제거 상태에서 부분적 운동범위 수행 G1(Trace): 관절운동 없으나 약간 근수축이 있는 경우 G0(Zero): 관절운동 및 근수축도 없는 경우			치치 욕창	☐ 없음 ☐ 있음	
			요구 특수치치요구	☐ 없음 ☐ 있음(장루,기관지관리,투석)	
			배변장해	☐ 없음 ☐ 있음	
			배뇨장해	☐ 없음 ☐ 있음	
⑮ 최근통원주기 ☐ 1주일에 3~5회 ☐ 1주일에 1~2회 ☐ 2주일에 1~2회 ☐ 3주일에 1~2회 ☐ 월 1~2회 정도 ☐ 해당없음					
⑯ 수술여부 ☐ 없음 ☐ 있음(수술명: , 수술일:)					
⑰ 현재까지 치료 요약 및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주요 치료내역 및 상병상태 경과, 통증정도 등에 대하여 기재)					

2. 시범재활치료계획

① 예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 입원() ☐ 통원()
② 중점재활분야	
③ 위 예상치료가 기간이 필요한 사유 및 향후 치료계획(필요한 치료 또는 조치 예정 내역 기재)	
④ 기능상태평가	평 가 항 목 평 가 일 자 평 가 점 수

3. 환자동의서

본인은 시범재활치료에 대하여 주치의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시범재활 치료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환자와의 관계: 년 월 일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호	전문 과목: 성명: (서명)	보험회사 귀하

재활심리상담(개인) 결과서					
환자번호		진 료 과			
성 명		연령 / 성별		결혼	
사고일자		평가일자			
진 단 명			주 치 의		
평가방법					
상담내용 (개인 /가족)	※ 환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치료 기법 중 환자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문제와 갈등의 원인, 해결을 위해 심층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되, 치료 동기,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상태, 대인 관계, 가족 관계 및 직업 복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상담 후 작성				
상담결과					
자격종별 : 자격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9. 11. 4.>

(앞면)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

A. 일반적 사항

1. 환자성명:

2. 입원일:

3. 작성일:

4. 읽고 쓰기가 가능합니까?

☐ 1. 가능

☐ 2. 불가능

☐ 3. 확인 불가

5. 주민등록상의 가구원 수

()명

6. 가구형태

6-1. 주민등록기준

☐ 1. 1인 가구

☐ 2. 부부가구

☐ 2-1. 둘 다 노인

☐ 2-2. 한 쪽만 노인

☐ 2-3. 둘 다 노인이 아님

☐ 3. 자녀동거가구

☐ 4. 기타 가구 ()

6-2. 실제거주기준

☐ 1. 1인 가구

☐ 2. 부부가구

☐ 2-1. 둘 다 노인

☐ 2-2. 한 쪽만 노인

☐ 2-3. 둘 다 노인이 아님

☐ 3. 자녀동거가구

☐ 4. 기타 가구 ()

7. 입원 전 거주지

☐ 1. 환자본인 집

☐ 2. 자녀/친인척/지인 등의 집

☐ 3. 의료기관

☐ 3-1. 요양병원

☐ 3-2. 요양병원 외의 의료기관

☐ 4. 장기요양시설

☐ 5. 장기요양시설 외 사회복지시설

☐ 6. 기타 ()

8. 의료보장유형

☐ 1. 건강보험

☐ 2. 건강보험 차상위 1종

☐ 3. 건강보험 차상위 2종

☐ 4.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 6. 자동차보험

☐ 7. 기타 ()

B. 경제적 측면

1. 현재 직업 유무

☐ 1. 현재 일을 하고 있음

☐ 2. 과거에는 일을 하였으나 지금은 하지 않음

☐ 3. 평생 일을 하지 않음

1-1. (1번 문항의 답이 '2' 인 경우에만 응답)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 1. 정년퇴직

☐ 2.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

☐ 3. 장애/질병으로 인한 중도퇴직

☐ 4. 해고 등으로 인한 실직

☐ 5. 본인 스스로 퇴사

☐ 6. 기타 ()

2. 주 수입원의 종류 (해당항목 모두 체크)

☐ 1. 근로소득 ☐ 1-1. 노인일자리사업 ☐ 1-2. 그 외

☐ 2. 부동산 등 재산소득

☐ 3. 사회보험

☐ 4. 정부보조금

☐ 5. 가족, 친척 등 지원

☐ 6. 후원금

☐ 7. 기타 ()

2-1. (2번 문항의 답이 '3'인 경우에만 응답) 사회보험 종류 (해당항목 모두 체크)

☐ 1. 공적연금

☐ 2. 고용보험

☐ 3. 산재보험

☐ 4. 기타 ()

2-2. (2번 문항의 답이 '4'인 경우에만 응답) 정부보조금 종류 (해당항목 모두 체크)

☐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1-1. 생계급여 ☐ 1-2. 주거급여

☐ 1-3. 자활급여

☐ 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 3. 기초노령연금

☐ 4. 긴급복지지원금

☐ 5. 잘 모름

☐ 6. 기타 ()

3. 월 가구 소득

☐ 1. 50만원 미만

☐ 2. 50만원~100만원 미만

☐ 3. 100만원~200만원 미만

☐ 4. 200만원 이상

4. 가구의 현재 재산 규모 (해당항목 모두 체크)

☐ 1. 동산 ()원

☐ 2. 부동산 ()원

☐ 3. 기타 ()원

5. 과거에 정부보조금을 받기위해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신청을 의뢰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 1. 아니오

☐ 2. 예 ☐ 2-1. 승인되어 수혜를 받고 있음

☐ 2-2. 기각됨

☐ 2-3. 신청 중

6. 병원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민간보험이 있습니까?

☐ 1. 아니오

☐ 2. 예

7.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

☐ 1. 아니오

☐ 2. 예

C. 심리사회적 측면

■ 가족 및 지지체계

1. 가족 교류(왕래) 정도

- ☐ 1. 전혀 없음 ☐ 2. 가끔(2개월에 한번) ☐ 3. 보통 (한 달에 한번) ☐ 4. 자주 ☐ 5. 가족 없음

2. 친척/친구/이웃/지인 교류(왕래) 정도

- ☐ 1. 전혀 없음 ☐ 2. 가끔(2개월에 한번) ☐ 3. 보통 (한 달에 한번)
☐ 4. 자주 ☐ 5. 친척/친구/이웃/지인 없음

3. 여가 및 사회활동참여 (해당항목 모두 체크)

- ☐ 1. 경로당 ☐ 2. 사회(노인)복지관 ☐ 3. 동호회 ☐ 4. 종교단체 ☐ 5. 봉사단체 ☐ 6. 지역단체 ☐ 7. 기타 ()

4.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 1. 아니오 ☐ 2. 예 (답이 '예'인 경우만 4-1평가)

4-1. 가족관계 평가(대처자원, 가족발달주기, 의사소통, 가족역할의 유연성 등에 대해서 평가하여 기술)

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있습니까?

- ☐ 1. 아니오 ☐ 2. 예 (답이 '예'인 경우만 5-1평가)

5-1. 지지체계의 종류

- ☐ 1. 가족 ☐ 2. 가족 외()

■ 질병의 이해 및 수용 정도 (※ 6번~8번 문항은 평가자가 환자와 가족의 상담을 통해 평가)

6. 질병(장애)에 대한 환자의 이해정도

- ☐ 1. 명확히 이해 ☐ 2. 일부 이해 ☐ 3. 이해 못함

7. 질병(장애)에 대한 환자의 수용정도

- ☐ 1. 명확히 이해하고 수용 ☐ 2. 일부 이해 ☐ 3. 이해 못함

8. 질병(장애)에 대한 가족의 이해정도

- ☐ 1. 명확히 이해 ☐ 2. 일부 이해 ☐ 3. 이해 못함 ☐ 4. 해당 없음

9. 사회복귀 후 다음의 역할 수행이 가능합니까?

- 9-1. 일상생활 ☐ 1. 가능 ☐ 2. 불가능 ☐ 3 기타 ()
 9-2. 가족 역할 ☐ 1. 가능 ☐ 2. 불가능 ☐ 3 기타 ()
 9-3. 사회적 역할 ☐ 1. 가능 ☐ 2. 불가능 ☐ 3 기타 ()

D. 퇴원관련사항

■ 환자와 가족의 퇴원준비

1. 환자의 퇴원 고려 정도

- ☐ 1. 의료적 치료가 완료 되는대로 퇴원 희망 ☐ 2. 퇴원과 관련된 어려움(걱정)이 있어 거부 ☐ 3. 기타 ()

1-1. (1번 문항의 답이 '2' 경우에만 응답) 퇴원방해 요인 (해당항목 모두 체크)

- ☐ 1. 퇴원 후 거처 없음 ☐ 2. 돌봄 제공자 부재 ☐ 3. 병원비 ☐ 4. 경제적 어려움
☐ 5. 식사 준비 ☐ 6. 가족 간의 불화 ☐ 7. 질병과 관련한 막연한 불안/두려움
☐ 8.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처(호흡기, 욕창, 배뇨, 기관절개, 감염 등)
☐ 9. 이동의 어려움 ☐ 10. 고립감/외로움 ☐ 11. 기타 ()

2. 가족의 퇴원 고려 정도

- ☐ 1. 의료적 치료가 완료 되는대로 퇴원 희망 ☐ 2. 퇴원과 관련한 어려움(걱정)이 있어 거부 ☐ 3. 기타 ()

2-1. (2번 문항의 답이 '2'인 경우에만 응답) 퇴원방해 요인 (해당항목 모두 체크)

- ☐ 1. 퇴원 후 모실 곳이 없음 ☐ 2. 돌봄 제공자 부재 ☐ 3. 병원비 ☐ 4. 경제적 어려움
☐ 5. 식사 준비 ☐ 6. 가족 간의 불화 ☐ 7. 질병과 관련한 막연한 불안/두려움
☐ 8.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처(호흡기, 욕창, 배뇨, 기관절개, 감염 등)
☐ 9. 이동의 어려움 ☐ 10. 기타 ()

■ 퇴원 후 거주지

3. 퇴원 후 거주지가 있습니까?

- ☐ 1. 아니오 ☐ 2. 예

3-1. (3번 문항의 답이 '예'인 경우에만 응답) 퇴원 후 거주지

- ☐ 1. 환자 본인 집 ☐ 2. 자녀/친인척/지인 등의 집 ☐ 3. 장기요양시설
☐ 4. 장기요양시설 외 사회복지시설 ☐ 5. 기타 ()

4.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 거주하고 싶은 곳

- ☐ 1. 환자 본인 집 ☐ 2. 자녀/친인척/지인 등의 집
☐ 3. 돌봄, 식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장기요양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 4. 기타 () ☐ 5. 해당 없음 ()

5. 주택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비용 지원이 필요합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만 체크)

- ☐ 1. 아니오 ☐ 2. 예 ☐ 3. 해당 없음

■ 퇴원 후 돌봄제공자**6. 치료 및 돌봄 주 의사결정자**

- ☐ 1. 환자 본인 ☐ 2. 가족 (관계:) ☐ 3. 기타 (관계:)

7. 입원 전 돌봄 제공자 (해당항목 모두 체크)

- ☐ 1. 환자 본인 ☐ 2. 가족 (관계:) ☐ 3. 유급 간병인
☐ 4. 요양보호사(노인장기요양보험등) ☐ 5. 기타 (관계:)

8. 퇴원 후 돌봄 제공자 (해당항목 모두 체크)

- ☐ 1. 환자 본인 ☐ 2. 가족 (관계:) ☐ 3. 유급 간병인
☐ 4. 요양보호사(노인장기요양보험등) ☐ 5. 기타 (관계:)

■ 주거환경개선**9. 주택소유 형태**

- ☐ 1. 자가 ☐ 2. 공공임대 ☐ 3. 일반 전·월세 ☐ 4. 기타 ()

10. 주택유형

- 10-1. 가옥형태 ☐ 1. 아파트 ☐ 2. 빌라 ☐ 3. 단독주택 ☐ 4. 다세대주택 ☐ 5. 기타 ()
 10-2. 진입형태 (복수선택 가능) ☐ 1. 엘리베이터 ☐ 2. 계단 ☐ 3. 경사로 ☐ 4. 난간 ☐ 5. 기타 ()

11. 화장실 유형

- ☐ 1. 양변기 ☐ 2. 화변기 ☐ 3. 이동변기 ☐ 4. 기타 ()

12. 집으로 퇴원 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필요합니까?

- ☐ 1. 아니오 ☐ 2. 예

13. (12번 문항의 답이 '예'인 경우에만 응답) 주거환경 개선 필요 부분 (해당항목 모두 체크)

- 13-1. ☐ 안전관리 [☐ 1. 문턱 ☐ 2. 미끄럼방지 ☐ 3. 손잡이 ☐ 4. 기타 ()]
 13-2. ☐ 이동 [☐ 1. 계단 ☐ 2. 문턱 ☐ 3. 안전 바 ☐ 4. 기타 ()]
 13-3. ☐ 일상생활 [☐ 1. 화장실 ☐ 2. 부엌 ☐ 3. 거실 ☐ 4. 침실 ☐ 5. 기타 ()]
 13-4. ☐ 기타 ()

■ 퇴원 후 이동수단**14. 퇴원 시 또는 퇴원 후 이동 시 도움 제공자 유무**

- ☐ 1. 없음 ☐ 2. 있음 ☐ 3. 도움이 필요 없음

15. 이동수단

- ☐ 1. 자가용 [☐ 1-1. 자가운전 ☐ 1-2. 타인운전]
☐ 2. 대중교통 [☐ 2-1. 자립이용 ☐ 2-2. 도움필요]
☐ 3. 구급차 ☐ 4. 교통약자 이동지원 ☐ 5. 도보 ☐ 6. 기타 ()

E. 활용가능자원파악**1. 장애정도**

- ☐ 1. 해당 사항 없음 ☐ 2. 신청이 필요하나 신청하지 못함 ☐ 3. 신청 중
☐ 4. 신청하였으나 인정 못 받음 ☐ 5. 장애정도 인정받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1-1. (1번 문항의 답이 '5'인 경우에만 응답) 장애의 종류

- ☐ 1. 지체장애 ☐ 2. 뇌 병변장애 ☐ 3. 시각장애 ☐ 4. 청각장애 ☐ 5. 언어장애
☐ 6. 안면장애 ☐ 7. 신장장애 ☐ 8. 심장장애 ☐ 9. 간장애 ☐ 10. 호흡기장애
☐ 11. 장루·요루장애 ☐ 12. 간질장애 ☐ 13. 정신지체장애 ☐ 14. 정신장애 ☐ 15. 발달장애

1-2. (1번 문항의 답이 '5'인 경우에만 응답) 장애 정도

- ☐ 1. 심한 장애인 ☐ 2.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이용 중이거나 경험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음

☐ 1. 아니오 ☐ 2. 예

2-1. (2번 문항의 답이 '예'인 경우에만 응답)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 (해당항목 모두 체크)

- ☐ 1. 사례관리 ☐ 2. 재가서비스 ☐ 3. 노인돌봄서비스 ☐ 4. 방문보건서비스
☐ 5. 가사간병서비스 ☐ 6.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 7. 기타()

F. 문제사정

문제유형	문제여부
■ 경제적 문제	
1. 병원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1. 아니오 ☐ 2. 예
2. 퇴원 후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1. 아니오 ☐ 2. 예
3. 퇴원 후 치료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1. 아니오 ☐ 2. 예
■ 심리사회적 문제	
4. 질병,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까?	☐ 1. 아니오 ☐ 2. 예
5. 질병, 장애에 대한 수용이 어렵습니까?	☐ 1. 아니오 ☐ 2. 예
6. 사회복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1. 아니오 ☐ 2. 예
7.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합니까?	☐ 1. 아니오 ☐ 2. 예
8. 가족기능에 문제가 있습니까?	☐ 1. 아니오 ☐ 2. 예
■ 퇴원계획 문제	
9. 퇴원 후 거주지 문제가 있습니까?	☐ 1. 아니오 ☐ 2. 예
10. 퇴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까?	☐ 1. 아니오 ☐ 2. 예
11. 퇴원 후 환자 돌봄에 문제가 있습니까?	☐ 1. 아니오 ☐ 2. 예
12. 퇴원 후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 1. 아니오 ☐ 2. 예
13. 퇴원 또는 외래 치료 시 이동수단의 문제가 있습니까?	☐ 1. 아니오 ☐ 2. 예

■ 지역사회 자원연계 문제

14.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필요합니까? ☐ 1. 아니오 ☐ 2. 예

14-1. (14번 문항의 답이 '예'인 경우에만 응답)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의 종류(해당항목 모두 체크)

- ☐ 1. 일자리 ☐ 2. 주거 ☐ 3. 일상생활 ☐ 4.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 5.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 6. 보호 및 돌봄, 요양 ☐ 7. 안전 및 권익보장

G. 활용가능 자원파악

유형	개입계획			
	문제의 심각성		개입수준	
심리사회적문제	☐ 1. 문제없음 ☐ 3. 중간 정도	☐ 2. 심하지 않음 ☐ 4. 심함	☐ 1. 해당 없음 ☐ 3. 서비스연계	☐ 2. 단순연계 ☐ 4. 집중사례관리
경제적문제	☐ 1. 문제없음 ☐ 3. 중간 정도	☐ 2. 심하지 않음 ☐ 4. 심함	☐ 1. 해당 없음 ☐ 3. 서비스연계	☐ 2. 단순연계 ☐ 4. 집중사례관리
퇴원계획문제	☐ 1. 문제없음 ☐ 3. 중간 정도	☐ 2. 심하지 않음 ☐ 4. 심함	☐ 1. 해당 없음 ☐ 3. 서비스연계	☐ 2. 단순연계 ☐ 4. 집중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연계문제	☐ 1. 문제없음 ☐ 3. 중간 정도	☐ 2. 심하지 않음 ☐ 4. 심함	☐ 1. 해당 없음 ☐ 3. 서비스연계	☐ 2. 단순연계 ☐ 4. 집중사례관리

환자지원팀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기타1(), 기타2()
 평가자(직종) : _____(서명 또는 인)

(뒷면)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 작성요령

【작성 원칙】

1. 환자지원팀은 주거, 돌봄, 경제적지원 등의 퇴원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사회경제적 욕구가 있는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 사회환경 선별조사(환자평가표 일반사항 11번~14번 질문을 활용)를 실시하고 잠재적 환자를 선별한 후 30분 이상 환자 및 보호자와 상담·면담을 통해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수행함
2.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는 평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함

【일반사항】

- 가구형태 실제거주 기준: 평가시점에서 3개월 이상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함

【경제적 측면】

- 주 수입원의 종류
 - 근로소득: 환자본인의 노동을 통한 소득
 - 부동산 등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매매차익, 권리금 등 포함
 - 사회보험: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험 일시금 등이 포함됨
 - 정부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기초노령연금, 긴급복지지원금 등이 포함됨
 - 가족, 친척 등 지원: 부모나 자녀,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용돈(현물제외) 등 포함
 - 후원금: 종교 및 사회단체에서 받는 현금 등이 포함됨

【심리사회적 측면】

■ 가족 및 지지체계

- 가족교류: 2촌 이내 혼인, 혈연 또는 입양으로 형성된 가족과의 교류 횟수 기재. 면대면의 방문, 전화, 편지 등 포함
- 친척/친구/이웃/지인 교류: 3촌 이상의 친인척,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거나 인접하여 사는 이웃,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교류 횟수를 기재. 면대면의 방문, 전화, 편지 등 포함
- 지지체계: 가족 및 가족 외(종교, 지역사회기관(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사회적 지지체계)를 모두 포함하며, 지지체계의 종류를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빈도수까지 기재
- 질병(장애)에 대한 환자의 이해: 환자의 현재의 진단명, 치료계획, 치료에 대한 기대수준을 평가
- 질병(장애)에 대한 환자의 수용정도: 질병(장애)의 특성·예후,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등에 대한 수용정도 평가
- 질병(장애)에 대한 가족의 이해: 진단명·치료계획에 대한 이해, 퇴원 후 건강관리 및 가족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 정도

【개입계획 및 개입수준】

각 영역에 맞는 문제들에 대한 개입계획 수립 후 결과를 평가

■ 문제의 심각성

- 문제없음: 해당되는 문제없음
- 심하지 않음: 문제가 있으나, 단순 또는 일회성 외부 개입 및 자원 투입(간단한 퇴원교육 등)으로 해결 가능
- 중간정도: 문제가 있어 개입이 필요한 단계. 분기 또는 반기별 외부 개입 및 자원 투입으로 해결 가능
- 심함: 문제가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단계. 매달 또는 매주 간격의 외부 개입 및 자원투입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정도

■ 개입수준

- 해당 없음: 개입 필요 없음
- 단순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단순 이용안내나 정보제공 등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연계가 가능한 경우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보건소 각종 건강관련 서비스 안내 등)
- 서비스 연계: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기까지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예: 서류준비, 지원신청, 지원결과 확인 등 연계 과정을 직접 진행 하는 경우)
- 집중사례관리: 환자의 건강 및 복지관련 욕구를 토대로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연계 한 달 이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확인해야 하는 정도의 개입수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9. 11. 4.>

(앞면)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	
기본 사항	성명 : _____ 성별 : _____ 생년월일 : _____ 년 월 일 (만 세) 행정 주소지 : _____ 환자 전화번호 : _____ 퇴원 후 거주지 : _____ 보호자 전화번호 : _____ 입원일 : _____ 년 월 일 퇴원 예정일 : _____ 년 월 일
보건 의료 정보	담당의 : _____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 : ☐ 해당 없음 ☐ 기관지 절개관 관리 ☐ 흡인 ☐ 산소요법 ☐ 욕창간호 ☐ 암생검증간호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 당뇨발 간호 ☐ 기타 질병에 대한 유의점 () 만성질환 : ☐ 해당 없음 ☐ 고혈압 ☐ 당뇨 ☐ 만성폐쇄성폐질환 ☐ 천식 ☐ 고지혈증 ☐ 심부전 ☐ 치매 ☐ 기타 () 약제 관리 : ☐ 해당 없음 ☐ 완전자립 ☐ 투약도움 필요 - 다제 약물 : ☐ 해당 없음 ☐ 5개 미만 ☐ 5개 ~ 9개 ☐ 10개 ~ 14개 ☐ 15개 이상
건강 수준 (신체 정신)	식사 하기 : ☐ 완전자립 ☐ 감독필요 ☐ 약간의 도움 ☐ 상당한 도움 ☐ 전적인 도움 ☐ 행위 발생안함 - 형태 : ☐ 일반식 ☐ 잘게 썰어줌 ☐ 죽 또는 미음 ☐ 경관영양 - 삼킴 장애 : ☐ 없음 ☐ 있음 ☐ [간헐적] ☐ 항상 ☐ 확인불가 체위 변경하기 : ☐ 완전자립 ☐ 감독필요 ☐ 약간의 도움 ☐ 상당한 도움 ☐ 전적인 도움 ☐ 행위 발생안함 옮겨 앉기 : ☐ 완전자립 ☐ 감독필요 ☐ 약간의 도움 ☐ 상당한 도움 ☐ 전적인 도움 ☐ 행위 발생안함 - 보행능력 : ☐ 완전자립 ☐ 감독필요 ☐ 1명 도움필요 ☐ 2명 도움필요 ☐ 걷지 못함 - 이동방법(실내) : ☐ 도보 ☐ 지팡이 ☐ 보행기 ☐ 휠체어 ☐ 기타 () 화장실 사용하기 : ☐ 완전자립 ☐ 감독필요 ☐ 약간의 도움 ☐ 상당한 도움 ☐ 전적인 도움 ☐ 행위 발생안함 - 방법 : ☐ 화장실 ☐ 이동식변기 ☐ 간이식 침상변기 ☐ 기저귀 인지기능 : ☐ 스스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 ☐ 인식이술이 다소 손상됨 ☐ 새로운 상황에서만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음 ☐ 인식이술이 심하게 손상됨 문제행동 : ☐ 없음 ☐ 망상 ☐ 환각 ☐ 초조/공격성 ☐ 우울/낙담 ☐ 불안 ☐ 수면/야간행동 ☐ 들뜬 기분/다행감 ☐ 탈억제 ☐ 과민/불안정 ☐ 배회 ☐ 무감동/무관심 ☐ 이상운동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 식욕/식습관의 변화 ☐ 케어에 대한 저항 ☐ 배회
사회 환경 상황	퇴원 후 거주지 : ☐ 환자 본인 집 ☐ 자녀/친척/지인 등의 집 ☐ 장기요양시설 ☐ 장기요양시설 외 사회복지시설 ☐ 기타 () 가구 형태 : ☐ 1인 가구 ☐ 부부가구 ☐ 자녀동거부부 ☐ 기타 () 퇴원 후 돌봄 제공자 : ☐ 환자 본인 ☐ 가족(관계:) ☐ 유급 간병인 ☐ 요양보호사 ☐ 기타 (관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 ☐ 안전관리 ☐ [문턱] ☐ 미끄럼방지 ☐ 손잡이 ☐ 기타 () ☐ 이동 ☐ 계단 ☐ 문턱 ☐ 안전 바 ☐ 기타 () ☐ 일상생활 ☐ 화장실 ☐ 부엌 ☐ 거실 ☐ 침실 ☐ 기타 () ☐ 기타 () ☐ 해당없음 이동 수단 : ☐ 자가용 ☐ 자가운전 ☐ 타인운전 ☐ 대중교통 ☐ 자립이용 ☐ 도움필요 ☐ 구급차 ☐ 교통약자 이동지원 ☐ 도보 ☐ 기타 () 장기요양등급 : ☐ 해당 없음 ☐ 신청 ☐ 신청 예정 ☐ 진행 중 ☐ 완료: 등급 ☐ 기등급대: 등급 ☐ 추후 재의뢰 ☐ 해당 없음 ☐ 신청 필요하나 신청하지 못함 ☐ 3. 신청 중 장애정도 : ☐ 신청하였으나 인정 못 받음 ☐ 5. 장애정도 인정받음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 ☐ 해당 없음 ☐ 의료급여수급권자 1급 ☐ 의료급여수급권자 2급 ☐ 생계급여수급권자 ☐ 주거급여수급권자 ☐ 자활급여수급권자 ☐ 차상위 ※ 해당사항 모두 체크
지역 사회	일자리 : ☐ 해당 없음 ☐ 직업상담 및 알선 ☐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 창업지원 ☐ 자활 및 일자리사업 ☐ 직업유지 및 자립지원 ☐ 구직관련 비용지원 주거 : ☐ 해당 없음 ☐ 주거환경개선 ☐ 거처마련 및 이주지원 ☐ 주거관련 비용지원 ☐ 해당 없음 ☐ 가사지원 ☐ 식사(식품)지원 ☐ 활동(이동)지원 ☐ 위생(이미용)지원 ☐ 생활용품 지원 ☐ 일상생활관련 비용지원 ☐ 복합지원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 ☐ 해당 없음 ☐ 검진 진단 및 치료 ☐ 재활치료 ☐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 의약품, 의약외품 및 보장구 지원 ☐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자원 연계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 ☐ 해당 없음 ☐ 정신건강교육 ☐ 심리검사 및 진단 ☐ 정서발달 및 치유지원 ☐ 정신, 심리상담 ☐ 정신질환자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 정신건강관련 비용 지원 ☐ 해당 없음 ☐ 장기시설보호 ☐ 단기 시설보호 ☐ 주야간 보호 ☐ 간병 및 돌봄 서비스 ☐ 장제서비스 ☐ 돌봄, 요양관련 비용지원 보호 및 돌봄, 요양 : ☐ 해당 없음 ☐ 안전 및 인권교육 ☐ 학대 및 폭력피해자 지원 ☐ 법률 및 재무상담 ☐ 법률지원관련 비용지원
계획	안전 및 권익보장 : ☐ 해당 없음 ☐ 법률지원관련 비용지원 ☐ 해당 없음 ☐ 지자체(케어안내창구) ☐ 보건소 ☐ 사회복지기관(복지관 등) ☐ 중독관리센터 ☐ 치매 안심센터 ☐ 건강보험공단(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연센터 등) ☐ 정신건강증진센터 ☐ 건강생활지원센터 ☐ 사회복지시설(요양시설 등) ☐ 기타 ()
종합 평가 의견	환자지원팀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기타1(), 기타2(), 기타3() 작 성 일 : _____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환자지원팀의 지원 계획에 동의하십니까? 환자(보호자) : _____ (서명)

영양기관명 : _____ 전화 : _____
 주 소 : _____ 팩스 : _____



2020년 5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관련 Q&A 안내

(자동차운영과-3446호, '14.9.2.)

■ 상급병실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13호, '14.9.1. 진료분부터 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교통사고환자가 4인실, 5인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료 수가(4인실, 5인실, 기본입원료) 및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2	‘키-1 상급병실료(1~3인실)’의 산정방법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한 상급병실료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이 경우 자동차보험은 환자부담금이 없으므로 상급병실료를 산정하되,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은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상급종합병원 1인실 산정방법 → 기본입원료 + 상급병실료 1인실(기본입원료와의 차액 : VA011, 90011)						
3	교통사고환자가 요양병원의 4·5인실에 입원할 경우 비용 산정방법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의 4·5인실은 상급병실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입원료와 상급병실료를 산정함. 이 경우에도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비용산정이 가능함 ▶ 요양병원의 상급병실료 4·5인실 코드 <table><tr><th>코드</th><th>분류</th></tr><tr><td>VA014(90014)</td><td>상급병실료 4인실(요양병원)</td></tr><tr><td>VA015(90015)</td><td>상급병실료 5인실(요양병원)</td></tr></table>	코드	분류	VA014(90014)	상급병실료 4인실(요양병원)	VA015(90015)	상급병실료 5인실(요양병원)
코드	분류							
VA014(90014)	상급병실료 4인실(요양병원)							
VA015(90015)	상급병실료 5인실(요양병원)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자동차운영보험과-4737호, '17.8.31.)

1. 한방물리요법(허-2, 49020)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원)
허-2-1		한방물리요법 주: 1.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경피전자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경추견인, 골반견인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4. 추나요법(허-2 93021~93022※),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종만 산정한다.		
	93023	가.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1일당]	20.37	
	93026	나. 경피전자자극요법(TENS)	45.93	
	93027	다.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45.93	
	93028	라. 경추견인	82.76	
	93029	마. 골반견인	80.48	

※ ('19.4.8.) 허-2 자료수가 삭제_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 의거 건강보험 수가코드 적용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원)
하-2-1	93030	바. 도인운동요법 [1일당] 주: 1. 손상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138.84	
	93031	2. 신체를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93032	사. 근건이완수기요법 [1일당] 주: 1. 근육손상 등으로 발생한 통증이나 장애에 대하여 해당 압통점, 경혈, 경근을 대상으로 마사지요법 등을 해당 부위에 10분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50.38	
	93033	2. 신체를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하-70-1		온냉경락요법		
	93024	가. 경피경근온열요법 주. 같은날 하-2-1 가.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4장 하-70 가. 경피경근온열요법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93025	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주. 같은날 하-2-1 가.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4장 하-70 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2. 상기 사항은 2017년 09월 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3. 기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 알림' (자동차운영과 -3554호, '15.9.8.)은 2017년 09월 11일부터 동 규정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끝.

○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

(자동차운영보험과-5916호, '17.10.31.)

1.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2인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진단이 필요함에 따라 입원진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을 '17.5.30.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시행에 따른 2인 의사 입원진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안내('17.5.30)

2.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따라 **시범사업의 경우 진료수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3. 동 시범사업은 타 시범사업과 달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 관련 입원 시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교통사고 환자에게도 해당 수가 적용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에서도 **동 시범 사업을 동일하게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방문의사의 면허번호 기재를 위해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JJ005'를 신설하고,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상기 사항은 2017년 5월 30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붙임]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범사업 수가 세부 작성요령

가. 청구원칙

- (1)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치료입원확인 시범사업 수가 내역)과 비시범사업내역(다른 진료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 (2)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의 명세서를 합하여 작성
※ 단, 사업시작일(5.30)일 이전 당월요양 개시일 명세서는 ‘치료입원확인료’ 및 ‘치료입원확인 관리료’에 변경일을 기재
-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특정내역구분 코드 신설 및 기재] ‘치료입원확인료’를 산정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예관한규정」(별표5)의 2. 진료내역 줄번호 (확장번호)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에 **특정내역 구분코드 ‘JJ00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란을 신설하여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명
JJ00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9(1)/9(6)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종류/면허번호를 기재 한다. 〈면허종류〉 1:의사

- (4) [특정내역 기재] ‘치료입원확인료’를 산정하는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8(위탁진료)에 [의뢰받은 의료기관기호/치료입원확인일]을 기재한다.
- (5)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예관한규정,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따른다.

나. 명세서 작성요령

항목	세부작성요령																											
치료입원 확인료	□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며, ‘치료입원확인료’는 특정내역란에 면허종류/면허번호, 의뢰받은 의료기관기호/치료입원확인일을 반드시 기재한다. (예시) 치료입원확인 필요 환자가 발생한 의원에서 종합병원에 치료입원 확인을 의뢰한 경우																											
	<table><tr><th>줄</th><th>항</th><th>목</th><th>코드 구분</th><th>코드</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r><tr><td>0022</td><td>01</td><td>03</td><td>1</td><td>IA921</td><td>68,430※</td><td>1</td><td>1</td><td>68,430</td></tr><tr><td>0023</td><td>01</td><td>03</td><td>1</td><td>IA940</td><td>5,560※※</td><td>1</td><td>1</td><td>5,560</td></tr></table>	줄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2	01	03	1	IA921	68,430※	1	1	68,430	0023	01	03	1	IA940	5,560※※	1	1	5,560
	줄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2	01	03	1	IA921	68,430※	1	1	68,430																			
	0023	01	03	1	IA940	5,560※※	1	1	5,56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2		JJ005		1/123456																					
	2		0022		JS008		11100010/20170603																					
	주) JJ005 :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내역을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8 : ‘치료입원확인 위탁’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구분 코드	특정내역	설 명
JJ00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의 내역을 「면허종류/면허번호」형태로 기재함 〈면허종류〉 1:의사 ◆ 기재형식 : 9(1)/9(6) ※ 6자리 미만의 면허번호 작성시 실제 면허번호대로 기재
JS008	위탁진료	◆ 치료입원 확인을 의뢰받은 「의료기관기호/치료입원확인일」형태로 기재 ◆ 기재형식 : 9(8)/ccyyymmdd

○ 치료입원확인 관리료: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

※ 종합병원 2020년 점수당단가 76.2원 적용

※※ 의원 2020년 점수당단가 85.8원 적용

라.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 (1) 시범기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보완 청구한다.
- (2) 시범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 받은 명세서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2020년 5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3.20.]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2020.3.20., 일부개정]
[별표 7] <개정 2020.3.20.>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 가. 보조기기는 제2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의지(義肢)·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자세보조용구는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 보조기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 나. 가목의 보조기기 중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보조차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으로서 공단이 부여한 제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 제품마다 부여된 코드로서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영문자와 숫자(이하 "표준코드"라 한다)와 바코드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보조차를 등록하려면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 표에서 "급여평가"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품목 등록의 기준·절차, 급여평가,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보조차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이 경우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내구연한(耐久年限)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 1) 같은 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義眼) 또는 보청기를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
- 2)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3)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다음 자세보조용구 중 하나 이상과 동시에 장착한 경우나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장착한 후 그 내구연한 내에서 다음 자세보조용구의 하나 이상을 추가로 장착한 경우
 - 가) 머리 및 목 지지대
 - 나)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 다) 다리 및 발 지지대

마.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내구연한 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소모품은 제외한다.

바. 보조기기 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 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해당 보조기기의 기준액(제2호에 따른 기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고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의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실구입금액 중에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아. 뇌병변장애인,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자. 제2호에 따른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보조차의 보험급여 대상자 및 진료과목 등 급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 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한다.

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조기기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딩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

타.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머리, 팔 또는 다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1) 머리 및 목 지지대
- 2)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 3) 다리 및 발 지지대

파. 보청기에 대한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1)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에 실시
- 2) 2020년 1월 1일부터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에 실시

2.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 한(년)
가. 팔 의지	1) 어깨가슴 의지 (fore - 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
			기능형	1,400,000	4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 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
			기능형	1,470,000	4
	3)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 - 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50%를 남기고 팔이 상실 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4)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 - 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 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5)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 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1,240,000	3
	6)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 - 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 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 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860,000	3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 한(년)
	7)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 - 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 의 35% ~ 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8)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 - 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 가 55% 이상 남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 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9)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10)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 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
			기능형	590,000	2
	11)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 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
나. 다리 의지	1) 한쪽 골반 의지 (hind - 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 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 한(년)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3)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 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4)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5)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
			실리콘형	2,010,000	5
	6)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 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
			실리콘형	1,810,000	3
	7)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
			실리콘형	1,520,000	3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 한(년)
	8)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 - 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 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 을 포함	일반형	740,000	3
			실리콘형	1,480,000	3
	9)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 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 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
			실리콘형	1,040,000	3
	10)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
			실리콘형	720,000	2
다. 팔 보조기	1) 어깨벌림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 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
	2)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 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 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
	3) 긴 팔 보조기 - 각도 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 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 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 한(년)
	4)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000	3
	5)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f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
라. 척추 보조기	1)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70,000	3
	2)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
	3) 목뼈 보조기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
	4)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
	5)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6)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 한(년)
	7) 코르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뒷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
마. 골반 보조기	골반 보조기 (pelvic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
바. 다리 보조기	1)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
	2)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 마비일 때 양쪽에 장착하는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
	4)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 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5)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 (Lenox - Hill)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 한(년)
	6)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
	7) 짧은 다리 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테두리(brim) 를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
	8)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 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 조기 ※ 크렌자크식은 스프링이 들어 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 크 발목관절 장치를 사용한 플 라스틱 재질[스트랩(strap), 지지대(upright), 장판지밴드 포함]의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 데 사용	일체형	120,000	3
			고정형 (90도 고정형)	310,000	
			크렌자크식	360,000	
	9)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metal ankle foot orthosis)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 우 사용	고정형 (90도고정형)	300,000	3
			크렌자크식	350,000	
사.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이 필요한 경우 사용		250,000	2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 한(년)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이 필요한 경우 사용		250,000	1
아. 그 밖의 보조 기기	1) 수동휠체어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 이 곤란한 경우 사용	일반형	480,000	5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 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 는 경우 사용	활동형	1,000,000	5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 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800,000	5
	2)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2
	3) 목발(crutches)			15,000	2
	4) 의안 (artificial eye)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620,000	5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3
	6) 콘택트렌즈			80,000	3
	7) 돋보기			100,000	4
	8) 망원경			100,000	4
	9) 흰지팡이			25,000	0.5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 한(년)
	10) 보청기 (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 한 보조기구		1,310,000	5
	11)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 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
	12)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 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 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 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
	13) 전동스쿠터 (moped)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 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 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 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
	14) 자세보조용구 - 앉기형 (adaptive seating device)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 추, 골반 또는 엉덩관절을 고정 하는 데 사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 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머리 및 목 지지대	21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 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 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lap tray)	170,000	3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 한(년)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	3
	15) 욕창예방방석	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250,000	3
	16)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400,000	3
	17) 이동식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구		2,500,000	5
	18) 보행보조차	전방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50,000	3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300,000	3
자.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

3.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 가. 기준액, 고시금액(제1호나목에 따라 급여평가를 거치는 보조기기만 해당한다)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호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의 사항

- 가. 보조기기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은 법 제41 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로 본다.
- 나. 보조기기의 사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의 소모품은 제외한다.
- 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제2호의 내구연한을 산정할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기기의 급여내용과 연계하여 산정한다.



2020년 5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2019.12.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0호(2020.1.1. 시행)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별표] 전문 중,

제1절 치과보철의 [진료원칙] 중 제6호,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제10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제11절 이송료, 제14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제15절 재활치료료 중 제3호, 제18절 예방접종비용은 제외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3호 관련

제1절 치과보철

[진료원칙] 〈개정 2010.4.27., 2019.12.27.〉

1. 보철재료는 금합금, 팔라듐합금, 코발트 크롬합금 또는 지르코니아를 사용한다.
2. 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 중 실시한 국소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보철시행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 등)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
4. 보철설계시행시 같은 조건의 두 가지 설계방법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치는 인접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한다.

[보철원칙] <개정 2010.4.27., 2014.3.31., 2015.12.30., 2016.12.30., 2019.12.27.>

1. 분류번호 카-1: 주조금관의 금합금 비례는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 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2. 분류번호 카-2: 4분의 3 금관의 금합금비례는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전치부 및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3. 분류번호 카-3 및 카-4: 도재전장주조관은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귀금속은 금 77.8~87.5%, 백금 4.0~9.1%, 팔라듐 5.5~9.9%의 조성비를 가지면서 백금의 순도는 97% 이상이어야 한다.
4. 분류번호 카-5: 국소의치는 고정성 가공의치로는 그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 백금가금은 순금 70%, 은 10%, 동 10%, 백금 10%의 비율로 하면서 백금의 순도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5. <삭제>
6. 분류번호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는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3분의 2 이상이 파절되거나 그 손상이 심하여 치관부에서 인공치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치경부를 포함한 우식증이나 불규칙한 파절을 치수치료한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 사용재료는 팔라듐이 25% 이상인 팔라듐·은합금으로 한다.
7. 분류번호 카-10: 포스트(기성품)는 치관부의 3분의 2 미만이 파절되거나 손상되어 치수치료한 치아로써 잔존치질이 부족하여 사용 중 파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8. 분류번호 카-11, 카-12 및 카-13: 악안면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절재 등으로 생긴 실질결손에 대해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적용하며, 보철물의 사용재료는 유치악의 경우는 국부의치에 준하고 무치악의 경우는 총의치에 준한다.
9. 분류번호 카-14: 보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10. <삭제>

11. 분류번호 카-18: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용재료는 순수지르코니아(ZrO_2)에 약3~5% 정도의 안정화제(stabilizer)를 첨가하며, 국제 표준화 시험법(ISO 6872, ISO 13356, ISO 10993)에 적합하여야 한다.

[치과보철료] <개정 2006.2.28., 2007.3.6.,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4.3.31., 2015.12.30., 2016.12.30., 2018.12.27., 2019.12.27.>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카-1	주조금관	425,000
카-2	3/4금관	311,640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502,380
카-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347,650
카-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1,718,470
카-6	삭제<2014.3.31.>	
카-7	삭제<2015.12.30.>	
카-8	삭제<2014.3.31.>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	150,260
카-10	포스트(기성품)	103,510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 유치악)	1,677,290
카-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유치악)	1,179,780
카-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무치악)	1,487,000
카-14	임시레진관	26,710
카-15	삭제<2014.3.31.>	
카-16	삭제<2014.3.31.>	
카-17	삭제<2019.12.27.>	
카-18	지르코니아 크라운	502,380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4.3.31. 2015.3.31., 2016.12.30., 2017.12.29., 2018.12.27.>

1.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각각의 유형 및 용도별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만 지급한다. 다만,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의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2. 재활보조기구의 수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3.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수수료 및 기타비용 중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상지의지는 반자동형(기능형)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미관형을 지급한다.
5. 하지의지는 일반형 소켓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형 소켓을 지급할 수 있다.
6. 넓적다리의지는 타-14-1(공압식 또는 유압식)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의 넓적다리 의지를 지급하며, 장착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타-15(인공지능식)를 지급한다.
7.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종결시 지급하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시마다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라도 진료담당 의사가 재활보조기구의 훼손, 마모 또는 신체 변형 등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수리하여도 계속 장착하기가 부적절하거나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요양기간 중 재활보조기구의 내구연한이 도래할 경우에는 재요양 종결시에 지급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를 치료 중에도 지급할 수 있다.

- 가.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나.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다.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라.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8. <삭제 2007.3.6>
9.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근전전동의수 배터리는 내구연한을 2년으로 하고,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한다.
10.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및 이에 따른 단순외과적 처치 및 수리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담당한다. 다만, 거리·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가지급, 처치 또는 수리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구입, 처치 또는 수리한 후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 가. 근전전동의수: 아주 짧은 아래팔, 짧은 아래팔, 표준 아래팔, 손목관절
- 나.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 다.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 라. <삭제 2018.12.27.>
- 마. <삭제 2016.12.30.>
- 바. 설치형 전동리프트: 차량용, 벽체용
11. 수전동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근전전동의수, 설치형 전동리프트(차량용, 벽체용)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해당 제품을 등록신청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한다.
- 가. <삭제 2018.12.27.>

- 나. 수전동 휠체어: 수동 및 전동 겸용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동휠체어 (B, C형) 기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의료기기 허가를 필요하여야 한다.
- 다. <삭제 2016.12.30.>
- 라.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 한국산업표준 KS P 0234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요하여야 한다.
- 마. 근전전동의수
 - (1) 의수의 전체 파지력은 100N 이상 이어야 한다.
 - (2) 근전위센서는 건식형이어야 하며, 침수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KS C IEC 60529: IPX7).
 - (3) 소켓을 제외한 전체 구성품의 무게는 800g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 (4) 의수의 내구성 시험은 10,000회 반복 개폐 동작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 바. 설치형 전동리프트: 국가산업기술표준 KS P ISO 10535의 관련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신고를 필요하여야 한다.
- 12. 근전전동의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에 지급한다.
- 13. <삭제 2014.3.31.>
- 14. 집뇨기는 1회에 2개를 지급한다.
- 15. <삭제 2016.12.30.>
- 16. 요양이 종결 된 후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또는 장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개정 2007.3.6., 2008.7.1.,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4.3.31., 2016.12.30., 2017.12.29., 2018.12.27., 2019.12.27.>

1. 의지

구분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연한
팔의지	타-6-1	아주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610,000	5년
팔의지	타-7-1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년
팔의지	타-8-1	표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표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년
팔의지	타-9-1	손목관절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손목관절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700,000	5년

구분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다리 의지	타-14-1	넓적다리 의지 (A-K prosthesis) (공압식 또는 유압식 : Pneumatic or Hydraulic Control Type)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 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 된 경우		
		가. 일반형 소켓 (일반형 인공발)		1,905,000	3년
		가-1. 일반형 소켓 (고기능형 인공발)		2,365,000	3년
		나. 실리콘형 소켓 (일반형 인공발)		2,735,000	5년
		나-1. 실리콘형 소켓 (고기능형 인공발)		3,195,000	5년
	타-15	넓적다리 의지 (A-K prosthesis) (인공지능식: Intelligent Control Type)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 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 된 경우		
		가. 일반형 소켓 (일반형 인공발)		3,284,000	3년
		가-1. 일반형 소켓 (고기능형 인공발)		3,744,000	3년
		나. 실리콘형 소켓 (일반형 인공발)		4,116,000	5년
		나-1. 실리콘형 소켓 (고기능형 인공발)		4,576,000	5년

2. 보조기

구분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연한
팔 보조기	타-23	짧은팔 보조기 다. 운동형 짧은팔 보조기	손목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기 능발휘를 위한 경우	142,000	3년
	타-22-라	어깨 보조기 (Shoulder Sling)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 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 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 우 사용	120,000	3년
척추 보조기	타-24	목뼈 보조기 (cervical spine brace) 라. 4지주 목뼈보조기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 해야 할 정도의 증증인 경우	203,000	3년
	타-25	등·허리뼈보조기 (dorsal, lumbar spinal brace) 마. 나이트식 허리뼈 보조기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 는 고정하는 경우	136,000	3년
다리 보조기	타-29	무릎관절보조기 (knee ankle cage) 라. 플라스틱무릎관절 보조기(수가공품)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 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 는 고정하는 경우로서, 무릎관절 에 변형이나 단축 등의 신체적 특성으로 기성품을 사용할 수 없 어 수가공품의 플라스틱 보조기 제작이 필요한 경우	282,000	3년

3. 기타

구분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연한
구두	타-31	〈삭제 2017.12.29.〉			
휠체어	타-32-3	〈삭제 2018.12.27.〉			
	타-32-4	수·전동휠체어 (Eletric power wheelchair convertible to Manual control)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3,934,000	6년
기타	타-37-1	가발(wig)	환자 상병정도 및 체형 등에 따라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깃가	5년
	타-37-4	〈삭제 2016.12.30.〉			
	타-37-5	욕창예방매트리스 (고무제 - 공기격자형)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또는 사지마비에 준하는 마비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1,449,000	3년
	타-37-6	집뇨기 (고무제-역류방지형) (urine bag)	뇌손상, 척수손상, 말초신경 손상, 비뇨기계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배뇨제어가 어려운 경우	57,000	1년
	타-37-7	〈삭제 2016.12.30.〉			
	타-37-8	설치형 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		
		가. 차량용		2,500,000	5년
나. 벽체용			2,500,000	5년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팔의지	타-38	위팔 의지 소켓 교환	201,000
	타-39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538,000
	타-39-1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930,000
	타-41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148,000
	타-42	훅크 교환	351,000
	타-43	의수 교환(기능형)	532,000
	타-44	케이블 교환	119,000
	타-45	어깨밴드 교환	24,000
	타-45-1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237,000
	타-45-2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기능형)	964,000
	타-45-3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장식 교환	454,000
	타-45-4	근전전동의수 소켓 교환	784,000
	타-45-5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 2개 1세트	105,000
	타-45-6	근전전동의수 변속기부 교환	654,510
	타-45-7	근전전동의수 모터부 교환	444,510
	타-45-8	근전전동의수 기어부 교환	150,510
	타-45-9	근전전동의수 골격부 교환	948,510
	타-45-10	근전전동의수 센서부 교환	339,510
	타-45-11	근전전동의수 제어부 교환	444,510
	타-45-12	근전전동의수 외피 교환	194,610
	타-45-13	기능성 의수 내피 교환	156,810
	타-45-14	위팔의지 폼카바 교환	172,570
	타-45-15	위팔의지 스타키네틱 교환	30,800
다리의지	타-46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	444,000
	타-47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865,240
	타-47-1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인공지능식)	2,681,980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타-47-2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1,060,000
	타-48	발목장식 교환(일반형)	158,000
	타-48-1	넓적다리의지 발목장식 교환(고기능형)	638,760
	타-49	족부외피 교환	45,850
	타-50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137,000
	타-51	흡인 밸브 교환	14,000
	타-52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네티트 교환	24,000
	타-53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104,000
	타-54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	416,000
	타-54-1	종아리 의지 스타키네티트 교환	21,000
	타-54-2	종아리 의지 스타키네티트카바 교환	18,000
	타-55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네티트카바 교환	21,000
	타-56	짧은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119,000
	타-57	짧은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83,000
	타-58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41,000
	타-59	종아리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435,000
	타-59-1	다리 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75,000
	타-59-2	회전테이블 교환	302,000
	타-59-3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664,000
	타-59-4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527,000
	타-59-5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541,000
	타-59-6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546,000
	타-59-7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646,000
	타-59-8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517,000
	타-59-9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197,000
	타-59-10	더마실 교환	108,000
	타-59-11	디지털 컵 교환	113,000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보조기	타-59-12	종아리의지 실리콘 슬리브 교환	168,000
	타-60	긴 다리 보조기 장식 교환	91,000
	타-61	듀랄루민 커프 교환	25,000
	타-62	발목장식 교환	33,000
	타-63	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21,000
	타-64	무릎띠 교환	19,000
	타-65	크렌자크식 발목관절 보조기 장식 교환	68,000
	타-66	다리보조기용 속신 교환	162,000
	타-66-1	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	100,000
휠체어	타-68	시트 교환(일반형)	27,000
	타-69	등받이 교환(일반형)	27,000
	타-70	뒷바퀴 전체 교환(일반형)	49,000
	타-70-1	〈삭제 2019.12.27.〉	
	타-70-2	〈삭제 2019.12.27.〉	
	타-70-3	뒷바퀴 타이어 교환(일반형)	12,000
	타-70-4	뒷바퀴 튜브 교환(일반형)	6,000
	타-70-5	뒷바퀴 타이어 교환(활동형)	14,000
	타-70-6	뒷바퀴 튜브 교환(활동형)	7,000
	타-71	앞바퀴 교환(일반형)	25,000
	타-71-1	앞바퀴 교환(전동)	31,000
	타-72	팔받침 교환(일반형)	12,000
	타-72-1	팔받침 교환(활동형)	13,000
	타-72-2	팔받침 교환(수·전동)	13,000
	타-73	발판 교환(일반형)	14,000
	타-74	핸드립 교환(일반형)	25,000
	타-75	브레이크 교환(일반형)	14,000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타-76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29,000
	타-77	12"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58,000
	타-77-1	〈삭제 2019.12.27.〉	
	타-77-2	12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2,000
	타-77-3	12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0,000
	타-77-4	14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4,000
	타-77-5	14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1,000
	타-78	16"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85,000
	타-78-1	〈삭제 2019.12.27.〉	
	타-78-2	16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8,000
	타-78-3	16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2,000
	타-79	시트 교환(전동)	29,000
	타-80	등받이 교환(전동)	35,000
	타-81	팔받침 교환(전동)	14,000
	타-82	발판 교환(전동)	16,000
	타-83	옆받이 교환(일반형)	16,000
	타-84	옆받이 교환(활동형)	26,000
	타-85	요크 교환(일반형)	30,000
	타-86	요크 교환(활동형)	43,000
	타-87	〈삭제 2011.12.30.〉	
	타-94	팔걸이 교환(일반형)	17,000
	타-94-1	팔걸이 교환(활동형)	18,000
	타-94-2	팔걸이 교환(전동)	19,000
	타-94-3	팔걸이 교환(수·전동)	17,000
	타-95	발걸이 교환(일반형)	35,000
	타-95-1	발걸이 교환(활동형)	36,000
	타-95-2	발걸이 교환(전동)	42,000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전동 스쿠터	타-95-3	발걸이 교환(수·전동)	35,000
	타-88	10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50,000
	타-88-1	10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50,000
	타-88-2	10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12,000
	타-88-3	10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8,000
	타-89	11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60,000
	타-89-1	11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60,000
	타-89-2	11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16,000
	타-89-3	11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10,000
	타-90	12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70,000
	타-90-1	12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70,000
	타-90-2	12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20,000
	타-90-3	12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12,000
기타	타-91	이동식 리프트용 배터리 교환: 2개 1세트	47,600

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신설 2007.3.6.〉

[산정지침] 〈개정 2008.12.31., 2010.4.27., 2014.3.31., 2017.12.29.〉

1. 화상환자에게 피부이식이나 드레싱 등의 화상처치에 사용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는 같은 부위에 대해 각각 한 번만 인정한다.
2. 자가유래피부각질세포(홀로덤, 케라힐)는 급성기 화상환자로서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40% 이상이고 3도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30% 이상으로 사용가능한 자기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 인정하되, 창상치유를 위한 드레싱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삭제 2008.12.31.〉
4. 〈삭제 2014.3.31.〉

[제품의 종류 및 금액 등] 〈개정 2008.12.31., 2011.12.30., 2014.3.31., 2015.12.30.〉

분류번호	분류	규격	단위	금액(원)	회사명
더-1	Holoderm	56㎤	1장	784,000	테고사이언스(주)
더-2	〈삭 제 2008.12.31.〉				
더-3	〈삭 제 2011.12.30.〉				
더-4	〈삭 제 2011.12.30.〉				
더-5	케라힐	1ml	1바이알	3,122,640	(주)엠씨티티

제12절 치료보조기구

〈신설 2008.12.31.〉

[지급원칙] 〈개정 2010.4.27〉

1. 치료보조기구는 해당 유형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한 번만 지급하되, 자가도뇨기구는 월 1개를 지급한다.
2. 치료보조기구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개정 2010.4.27., 2016.12.30., 2017.12.29.〉

분류 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머-1	이동형 산소치료기	산소치료서비스 지급 대상자로서 이동시에도 이동형 산소치료기가 필요한 경우	
	가. 산소절약기 부착		739,000
	나. 산소절약기 미부착		371,000
머-2	의료용흡입기 (Inhalators for medical use)	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기관지확장제 등 흡입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219,000
머-3	의료용흡인기 (Aspirators for medical use)	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의식장애 또는 호흡기장애 등으로 스스로 객담을 배출하기 어려운 경우	397,000
머-4	자가도뇨기구	척수손상 등으로 인하여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배뇨장애가 있고 잔뇨량이 100cc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자가도뇨기구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14,000
머-5	할로베스트(Halovest)	할로베스트 골견인술 대상자로서 경추골절의 척추 안정 또는 수술 후 경추부의 확고한 고정이 필요한 경우	1,800,000

제15절 재활치료료

〈신설 2011.12.30.〉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개정 2014.3.31., 2016.12.30., 2017.12.29.〉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전문재활치료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4.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치료 종류 및 금액] 〈개정 2014.3.31., 2016.12.30., 2017.12.29., 2019.12.27.〉

분류 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원)
어-1	언어치료 (Speech and Language Therapy) [1일당]	1인의 언어재활사가 별도로 구분된 언어치료실에서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36,540
어-2	전산화인지재활치료(주의·기억) [Computer-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 (Attention·Memory)] [1일당]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화인지치료도구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17,630

분류 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원)
어-3	증식치료(Prolotherapy) [1일당] 가. 사지관절부위 나. 척추부위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사용된 약제 및 유도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3. 관절 및 그 주위부를 1부위(요·천추부위는 1부위)로 하며, 동일예 2이상의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실시부위를 불문하고 최대 2부위 이내만 산정 4. '가', '나' 각각 치료기간 중 6회 이내만 산정	5,750 11,520
어-4	도수치료(Manual Therapy) [1일당]	1.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s),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edic manual therapy)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aedic manual therapy)는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시술부위를 불문하고 소정금액을 산정 3.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마사지치료(사-105)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며, 운동치료(사-106, 사-116) 또는 재활기능치료(사-130)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	25,000

분류 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원)
어-5	체 외충격파 치료 - 근골격계 질환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1.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유합, 석회 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 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이 발병 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 는 통증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 고,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 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하 되, 최초 시술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 3. 다만,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동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제통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하여 추가 산정	42,030

2. 검사료

[산정지침] <개정 2014.3.31., 2017.12.29.>

1. 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약제, 판독료 및 그 밖의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 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검사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검사의 종류 및 금액] <개정 2014.3.31., 2015.3.31., 2016.12.30., 2017.12.29., 2018.12.27.>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원)
여-1	언어전반진단검사 (Language Assessment)	중추신경계 손상 및 질환에 의한 언어장애가 있는 1인의 환자에 대하여 1인의 의사 또는 언어재활사가 표준화된 도구(K-WAB 등)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	40,190
여-2	발음 및 발성검사 (Assessment of Speech and Voice disorder) 가. 발음검사 나. 발성검사	말장애(말더듬 포함), 음성장애, 조음장애가 있는 1인의 환자에 대하여 1인의 의사 또는 언어재활사가 언어치료실에서 30분 이상 구강구조기능검사, 한국어발음의 위치별 정확도 측정, 최대모음연장발성시간, 조음교대운동속도 등을 측정한 후 검사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	28,130 56,260
여-5	10미터 걷는 동안 속도 평가 (10-meter timed walking test)	1. 중추신경계 손상 또는 질환에 의해 보행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0분 이상 정형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걷는 속도(Time) 및 보조기 사용여부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	9,850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원)
여-6	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	1. 뇌질환, 뇌손상, 척수질환, 척수손상,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 근골격계 질환 또는 손상 및 수술후 근육의 약화와 마비 등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근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측정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을 통한 평가를 시행한 경우에 부위별(상·하지, 척추 - 최대 3부위)로 산정 2. 같은 날 도수근력검사(나-661) 또는 등속성운동기능검사(너-775)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 3. 월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	9,260
여-7	연하장애 임상평가 (Clinical evaluation of Swallowing Difficulty)	1. 연하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0분 이상 정형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구강인두기능 신체사정 및 연하 시 증상 사정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	9,850

제16절 냉각부하검사료

〈신설 2016.12.30.〉

[산정지침]

1.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냉각부하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촬영료, 판독료 및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의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요-1	냉각부하검사	50,000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관련 청구코드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10010	20190101	카1	주조금관	425,000	
10020	20190101	카2	3/4금관	311,640	
10030	20190101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502,380	
10040	20190101	카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347,650	
10050	20190101	카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1,718,470	
10090	20190101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	150,260	
10100	20190101	카10	포스트(기성품)	103,510	
10110	20190101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	1,677,290	
10120	20190101	카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유치악)	1,179,780	
10130	20100131	카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무치악)	1,487,000	
10140	20190101	카14	임시레진관	26,710	
10180	20200101	카18	지르코니아크라온	502,380	
20011	20100131	타1가	어깨가슴 의지-미관형	720,000	건강보험
20012	20100131	타1나	어깨가슴 의지-기능형	1,400,000	건강보험
20021	20100131	타2가	어깨관절 의지-미관형	790,000	건강보험
20022	20100131	타2나	어깨관절 의지-기능형	1,470,000	건강보험
20031	20100131	타3가	짧은 위팔 의지-미관형	570,000	건강보험
20032	20100131	타3나	짧은 위팔 의지-기능형	1,250,000	건강보험
20041	20100131	타4가	표준 위팔 의지-미관형	570,000	건강보험
20042	20100131	타4나	표준 위팔 의지-기능형	1,250,000	건강보험
20051	20100131	타5가	팔꿈치관절 의지-미관형	560,000	건강보험
20052	20100131	타5나	팔꿈치관절 의지-기능형	1,240,000	건강보험
20061	20100131	타6가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미관형	560,000	건강보험
20062	20100131	타6나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기능형	860,000	건강보험
20063	20170101	타6-1	아주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5,610,000	
20071	20100131	타7가	짧은 아래팔 의지-미관형	450,000	건강보험
20072	20100131	타7나	짧은 아래팔 의지-기능형	750,000	건강보험
20073	20170101	타7-1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5,500,000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20081	20100131	타8가	표준 아래팔 의지-미관형	450,000	건강보험
20082	20100131	타8나	표준 아래팔 의지-기능형	750,000	건강보험
20083	20170101	타8-1	표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5,500,000	
20091	20100131	타9가	손목관절 의지-미관형	450,000	건강보험
20092	20100131	타9나	손목관절 의지-기능형	750,000	건강보험
20093	20170101	타9-1	손목관절 근전전동의수	5,700,000	
20101	20100131	타10가	손 의지-미관형	250,000	건강보험
20102	20100131	타10나	손 의지-기능형	590,000	건강보험
20110	20100131	타11	손가락 의지-미관형	120,000	건강보험
20120	20120901	타12	한쪽 골반 의지	1,740,000	건강보험
20130	20100131	타13	엉덩이관절 의지	1,740,000	건강보험
20143	20100131	타14가	넓적다리 의지-일반형	1,560,000	건강보험
20145	20190101	타14-1가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일반형 소켓(일반형 인공발)	1,905,000	
20155	20190101	타14-1가-1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일반형 소켓(고기능형 인공발)	2,365,000	
20144	20100131	타14나	넓적다리 의지-실리콘형	2,270,000	건강보험
20146	20190101	타14-1나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실리콘형 소켓(일반형 인공발)	2,735,000	
20156	20190101	타14-1나-1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실리콘형 소켓(고기능형 인공발)	3,195,000	
20151	20190101	타15가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 일반형 소켓(일반형 인공발)	3,284,000	
20157	20190101	타15가-1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 일반형 소켓(고기능형 인공발)	3,744,000	
20152	20190101	타15나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 실리콘형 소켓(일반형 인공발)	4,116,000	
20158	20190101	타15나-1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 실리콘형 소켓(고기능형 인공발)	4,576,000	
20153	20100131	타15-1가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일반형	1,560,000	건강보험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20154	20100131	타15-1나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실리콘형	2,270,000	건강보험
20161	20100131	타16가	무릎관절 의지-일반형	1,490,000	건강보험
20162	20100131	타16나	무릎관절 의지-실리콘형	2,010,000	건강보험
20171	20100131	타17가	종아리굴곡체중부하 의지-일반형	1,290,000	건강보험
20172	20100131	타17나	종아리굴곡체중부하 의지-실리콘형	1,810,000	건강보험
20181	20100131	타18가	짧은 종아리 의지-일반형	860,000	건강보험
20182	20100131	타18나	짧은 종아리 의지-실리콘형	1,520,000	건강보험
20191	20100131	타19가	종아리 의지-일반형	740,000	건강보험
20192	20100131	타19나	종아리 의지-실리콘형	1,480,000	건강보험
20201	20120901	타20가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일반형	530,000	건강보험
20202	20120901	타20나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실리콘형	1,040,000	건강보험
20211	20100131	타21가	의족-일반형	220,000	건강보험
20212	20100131	타21나	의족-실리콘형	720,000	건강보험
20221	20100131	타22가	긴 팔 보조기-일반형	240,000	건강보험
20222	20190927	타22나	어깨벌림 보조기	290,000	건강보험
20223	20100131	타22다	긴 팔 보조기-각도조절형	260,000	건강보험
20224	20180101	타22라	어깨 보조기(shoulder Sling)	120,000	
20231	20100131	타23가	짧은 팔 보조기	90,000	건강보험
20232	20100131	타23나	손가락관절 보조기	50,000	건강보험
20233	20100131	타23다	운동형 짧은팔 보조기	142,000	
20242	20120901	타24나	목뼈 보조기-토머스 소프트 칼라	60,000	건강보험
20243	20100131	타24다	목뼈보조기-cervical Jacket	380,000	건강보험
20244	20100131	타24가	목뼈 보조기-필라델피아	70,000	건강보험
20245	20100131	타24라	목뼈보조기-4지주 목뼈보조기	203,000	
20253	20100131	타25다	허리·엉치뼈 보조기-윌리엄식	190,000	건강보험
20254	20100131	타25라	척추보조기-콜셋	80,000	건강보험
20255	20100131	타25가	등·허리·엉치뼈 보조기-등·허리·엉치뼈 재킷(TLSO식 Jacket)	400,000	건강보험
20256	20100131	타25나	척추 보조기(나이트-테일러식 보조기)	150,000	건강보험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20257	20100131	타25마	등·허리뼈 보조기-나이트식 허리뼈 보조기	136,000	
20260	20100131	타26	골반보조기	120,000	건강보험
20271	20100131	타27가	긴 다리 보조기-골반 보조기 부착	540,000	건강보험
20272	20100131	타27나	긴 다리 보조기-골반 보조기 미부착	410,000	건강보험
20280	20100131	타28	양쪽 긴 다리 보조기	790,000	건강보험
20291	20100131	타29가	무릎관절 보조기-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190,000	건강보험
20292	20100131	타29나	무릎관절 보조기-레노스힐	160,000	건강보험
20293	20100131	타29다	무릎관절 보조기-무릎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80,000	건강보험
20294	20100131	타29라	플라스틱무릎관절보조기(수가공품)	282,000	
20302	20151115	타30나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크렌자크식	350,000	건강보험
20303	20151115	타30다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고정형(90도 고정형)	300,000	건강보험
20304	20100131	타30라	짧은 다리보조기-무릎관절체중부하식	370,000	건강보험
20305	20151115	타30마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일체형	120,000	건강보험
20306	20151115	타30바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 고정형 (90도 고정형)	310,000	건강보험
20307	20151115	타30사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크렌자 크식	360,000	건강보험
20311	20151115	타31가	맞춤형 교정용 신발-19세 이상인 사람 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자	250,000	건강보험
20314	20151115	타31가주	맞춤형 교정용 신발-18세 이하인 사람 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250,000	건강보험
20320	20180701	타32	수동휠체어-일반형	480,000	건강보험
20321	20100131	타32-1	전동휠체어	2,090,000	건강보험
20322	20100131	타32-2	전동스쿠터	1,670,000	건강보험
20323	20180701	타32-3	수동휠체어-활동형	1,000,000	건강보험
20324	20140401	타32-4	수·전동 휠체어	3,934,000	
20325	20180701	타32-5	수동휠체어-틸팅형, 리클라이닝형	800,000	건강보험
20330	20100131	타33	목발	15,000	건강보험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20331	20100131	타33-1	지팡이	20,000	건강보험
20340	20151115	타34	보청기	1,310,000	건강보험
20350	20100131	타35	저시력 보조안경	100,000	건강보험
20351	20100131	타36	콘택트렌즈	80,000	건강보험
20352	20100131	타35-2	망원경	100,000	건강보험
20353	20100131	타35-1	돋보기	100,000	건강보험
20360	20151115	타37	의안	620,000	건강보험
20370	20100131	타37-1	가발	씻가	
20371	20191024	타37-2	흰지팡이	25,000	건강보험
20372	20100131	타37-3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건강보험
20374	20100131	타37-4	욕창예방 방석(고무제-공기격자형)	250,000	건강보험
20375	20100131	타37-5가	욕창예방 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1,449,000	
20373	20100131	타37-5나	욕창예방 매트리스(교대부양형)	400,000	건강보험
20376	20100131	타37-6	집뇨기(고무제-역류방지형)	57,000	
20379	20200320	타37-7	이동식전동리프트	2,500,000	건강보험
20361	20180101	타37-8가	설치형 전동리프트-가. 차량용	2,500,000	
20362	20180101	타37-8나	설치형 전동리프트-나. 벽체용	2,500,000	
20380	20100131	타38	위팔 의지 소켓 교환	201,000	
20390	20100131	타39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538,000	
20391	20100131	타39-1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930,000	
20410	20100131	타41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148,000	
20420	20100131	타42	흑크 교환	351,000	
20430	20100131	타43	의수 교환(기능형)	532,000	
20440	20100131	타44	케이블 교환	119,000	
20450	20100131	타45	어깨밴드 교환	24,000	
20451	20100131	타45-1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237,000	
20452	20100131	타45-2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기능형)	964,000	
20453	20100131	타45-3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장식 교환	454,000	
20454	20100131	타45-4	근전전동의수 소켓 교환	784,000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20455	20100131	타45-5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 2개 1세트	105,000	
20950	20190101	타45-6	근전전동의수 변속기부 교환	654,510	
20951	20190101	타45-7	근전전동의수 모터부 교환	444,510	
20952	20190101	타45-8	근전전동의수 기어부 교환	150,510	
20953	20190101	타45-9	근전전동의수 골격부 교환	948,510	
20954	20190101	타45-10	근전전동의수 센서부 교환	339,510	
20955	20190101	타45-11	근전전동의수 제어부 교환	444,510	
20956	20190101	타45-12	근전전동의수 외피 교환	194,610	
20957	20190101	타45-13	기능성 의수 내피 교환	156,810	
20958	20190101	타45-14	위팔의지 폼카바 교환	172,570	
20959	20190101	타45-15	위팔의지 스타키네티트 교환	30,800	
20460	20100131	타46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	444,000	
20470	20190101	타47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865,240	
20471	20190101	타47-1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인공지능식)	2,681,980	
20472	20100131	타47-2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1,060,000	
20480	20190101	타48	발목장식 교환(일반형)	158,000	
20960	20190101	타48-1	넓적다리 의지 발목장식 교환(고기능형)	638,760	
20490	20190101	타49	족부외피 교환	45,850	
20500	20100131	타50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137,000	
20510	20100131	타51	흡인 밸브 교환	14,000	
20520	20100131	타52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네티트 교환	24,000	
20530	20100131	타53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104,000	
20540	20100131	타54	종아리 의지 소켓교환	416,000	
20992	20180101	타54-1	종아리 의지 스타키네티트 교환	21,000	
20993	20180101	타54-2	종아리 의지 스타키네티트카바 교환	18,000	
20550	20100131	타55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네티트카바 교환	21,000	
20560	20100131	타56	짧은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119,000	
20570	20100131	타57	짧은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83,000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20580	20100131	타58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41,000	
20590	20100131	타59	종아리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435,000	
20591	20100131	타59-1	다리 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75,000	
20592	20100131	타59-2	회전테이블 교환	302,000	
20593	20100131	타59-3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664,000	
20594	20100131	타59-4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527,000	
20595	20100131	타59-5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541,000	
20596	20100131	타59-6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546,000	
20597	20100131	타59-7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646,000	
20598	20100131	타59-8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517,000	
20599	20100131	타59-9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197,000	
20990	20100131	타59-10	더마실 교환	108,000	
20991	20100131	타59-11	디지털 컵 교환	113,000	
20961	20190101	타59-12	종아리 의지 실리콘 슬리브 교환	168,000	
20600	20100131	타60	긴 다리 보조기 장식 교환	91,000	
20610	20100131	타61	듀랄루민 컵 교환	25,000	
20620	20100131	타62	발목장식 교환	33,000	
20630	20100131	타63	커피용 가죽밴드 교환	21,000	
20640	20100131	타64	무릎띠 교환	19,000	
20650	20100131	타65	크렌자크식 발목관절 보조기 장식교환	68,000	
20660	20180101	타66	다리보조기용 속신 교환	162,000	
20661	20180101	타66-1	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	100,000	
20680	20200101	타68	시트 교환(일반형)	27,000	
20690	20200101	타69	등받이 교환(일반형)	27,000	
20700	20200101	타70	뒷바퀴 전체 교환(일반형)	49,000	
20703	20200101	타70-3	뒷바퀴 타이어 교환(일반형)	12,000	
20704	20200101	타70-4	뒷바퀴 튜브 교환(일반형)	6,000	
20705	20120101	타70-5	뒷바퀴 타이어 교환(활동형)	14,000	
20706	20120101	타70-6	뒷바퀴 튜브 교환(활동형)	7,000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20710	20200101	타71	앞바퀴 교환(일반형)	25,000	
20711	20100131	타71-1	앞바퀴 교환(전동)	31,000	
20720	20200101	타72	팔받침 교환(일반형)	12,000	
20911	20180101	타72-1	팔받침 교환(활동형)	13,000	
20912	20180101	타72-2	팔받침 교환(수·전동)	13,000	
20730	20200101	타73	발판 교환(일반형)	14,000	
20740	20200101	타74	핸드립 교환(일반형)	25,000	
20750	20200101	타75	브레이크 교환(일반형)	14,000	
20760	20100131	타76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29,000	
20770	20100131	타77	12"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58,000	
20772	20120101	타77-2	12"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2,000	
20773	20120101	타77-3	12"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0,000	
20774	20120101	타77-4	14"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4,000	
20775	20120101	타77-5	14"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1,000	
20780	20100131	타78	16"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85,000	
20782	20120101	타78-2	16"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8,000	
20783	20120101	타78-3	16"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2,000	
20790	20100131	타79	시트 교환(전동)	29,000	
20800	20100131	타80	등받이 교환(전동)	35,000	
20810	20180101	타81	팔받침 교환(전동)	14,000	
20820	20100131	타82	발판 교환(전동)	16,000	
20830	20200101	타83	옆받이 교환(일반형)	16,000	
20840	20100131	타84	옆받이 교환(활동형)	26,000	
20850	20200101	타85	요크 교환(일반형)	30,000	
20860	20100131	타86	요크 교환(활동형)	43,000	
20870	20120901	타87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160,000	건강보험
20880	20120101	타88	10"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50,000	
20881	20120101	타88-1	10"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50,000	
20882	20120101	타88-2	10"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12,000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20883	20120101	타88-3	10"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8,000	
20890	20120101	타89	11"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60,000	
20891	20120101	타89-1	11"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60,000	
20892	20120101	타89-2	11"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16,000	
20893	20120101	타89-3	11"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10,000	
20900	20120101	타90	12"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70,000	
20901	20120101	타90-1	12"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70,000	
20902	20120101	타90-2	12"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20,000	
20903	20120101	타90-3	12"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12,000	
20910	20190101	타91	이동식 리프트용 배터리 교환: 2개1세트	47,600	
20920	20131001	타92	자세보조용구 앉기형 - 몸통 및 골반지지대	880,000	건강보험
20921	20131001	타92-1	자세보조용구 앉기형 - 머리 및 목지지대	210,000	건강보험
20922	20131001	타92-2	자세보조용구 앉기형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70,000	건강보험
20923	20131001	타92-3	자세보조용구 앉기형 - 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	건강보험
20930	20190101	타93-1	보행보조차-전방	50,000	건강보험
20931	20190101	타93-2	보행보조차-후방	300,000	건강보험
20913	20200101	타94	팔걸이 교환(일반형)	17,000	
20914	20180101	타94-1	팔걸이 교환(활동형)	18,000	
20915	20180101	타94-2	팔걸이 교환(전동)	19,000	
20916	20180101	타94-3	팔걸이 교환(수·전동)	17,000	
20924	20200101	타95	발걸이 교환(일반형)	35,000	
20925	20180101	타95-1	발걸이 교환(활동형)	36,000	
20926	20180101	타95-2	발걸이 교환(전동)	42,000	
20927	20180101	타95-3	발걸이 교환(수·전동)	35,000	
80001	20130701	더1	Holoderm	784,000	
80005	20160101	더5	케라힐	3,122,640	
12010	20100131	머1가	이동형 산소치료기 - 산소절약기 부착	739,000	
12011	20100131	머1나	이동형 산소치료기 - 산소절약기 미부착	371,000	
12020	20100131	머2	의료용 흡입기	219,000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12030	20100131	머3	의료용 흡인기	397,000	
12040	20100131	머4	자가도뇨기구	14,000	
12050	20170101	머5	할로베스트	1,800,000	
51010	20180101	어1	언어치료[1일당]	36,540	
51020	20180101	어2	전산화인지재활치료(주의·기억)[1일당]	17,630	
51030	20180101	어3가	증식치료-가.사지관절부위[1일당]	5,750	
51031	20180101	어3나	증식치료-나.척추부위[1일당]	11,520	
51040	20180101	어4	도수치료[1일당]	25,000	
51050	20170101	어5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42,030	
52010	20180101	여1	언어전반진단검사	40,190	
52020	20180101	여2가	발음 및 발성검사 - 가. 발음검사	28,130	
52021	20180101	여2나	발음 및 발성검사 - 나. 발성검사	56,260	
52050	20190101	여5	10미터 걷는 동안 속도 평가	9,850	
52051	20190101	여6	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	9,260	
52052	20190101	여7	연하장애 임상평가	9,850	
54010	20170101	요1	냉각부하검사	50,000	



2020년 5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응급의료수가기준

응급의료수가기준

[시행 2014.6.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83호, 2014.5.27., 개정]

1. 적용기준

- 가.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의료법 제8조에 의한 보건 의료원에 적용한다.
- 나.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응급환자(이하 “응급 환자”라 한다)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산정기준

-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서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 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 나.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나” 응급처치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 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에게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에 분류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주·야간 또는 공휴일을 불문하고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 라.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의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한다.
- 마. 응급환자에게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 바. 응급환자에게 이 기준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진료비용을 산정한다.

부칙 〈제2014-83호, 2014.5.27.〉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 6. 5.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1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

가. 응급의료관리료 (예비병상에 따른 비용포함)

분류	점수
○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812.28
○ 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703.98
○ 지역응급의료기관	270.76

나. 응급처치료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서 [응급처치]로 분류된 항목
- 2) 기타 항목 : 항목별 점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른다.

기타 항목 분류

- 심낭천자 Pericardiocentesis
- 체외용 심박기 거치술
 - 가. 체외용 심박기 장치술 Setting of Cardiac Pacing with External Pulse Generator
 - 나. 체외용 심박기 조작[1일당] Cardiac Pacing with External Pulse Generator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 가. 심방 또는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with Atrial or Ventricular Lead(Single Chamber)
 - 나. 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with Atrial and Ventricular Lead(Dual Chamber)
- 경피적 인공심박동술 Transcutaneous Cardiac Pacing
 - 주 : 1. 시술당일의 EKG monitoring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2. 1회용 Electronic Patch는 별도 산정한다.

기타 항목 분류

-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by Thoracotomy
- 폐쇄식 흉강삽관술 Thoracostomy
 - 가. 폐쇄식 Closed
 - 나. 개방식 Open
- 흉막천자 Thoracentesis
- 윤상갑상막절개술 Cricothyroidotomy
 - 가. 투관침에 의한 경우 Trochar
 - 나. 피부절개에 의한 경우 Skin Incision
- 복수천자 Paracentesis, 복막천자 Abdominal Paracentesis
- 골수내주사 Intraosseous Injection
- 복막세척술 Peritoneal Lavage
- 컷다운 방법에 의한 동맥삽관술 Placement of Artery Catheter by Cut down
- 컷다운 방법에 의한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 Placement of Central Vein Catheter by Cut Down
- 중심정맥압 측정 [1일당]
 - 주 : 사용된 CVP 카테터는 별도 산정한다.
- 기관절개술 Tracheostomy
 - 가. 관혈적 기관절개술 Invasive Tracheostomy
 - 나.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 Percutaneous Dilatational Tracheostomy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0.3.24.] [법률 제17091호, 2020.3.2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8.〉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8. (생략)

[전문개정 2011.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2.28.] [보건복지부령 제711호, 2020.2.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제 2 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5.1.〉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사. 알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별표 3] 〈개정 2014.5.1.〉

이송처치료의 기준 (제11조 관련)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전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2020년 5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3.8.6., 2016.3. 22.>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 진료수기(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 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기계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 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주식인 것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이라 한다)의 보험금(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등(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2.5., 2014.12.30.〉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전부개정]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報酬)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8.22.>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액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 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제5조(보험 등예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군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임명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8.22.]	제1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이하 “보험 등 가입 의무”라 한다)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 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유 및 그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 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의 보험 등 가입 의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것 2. 운행중지기간이 적절할 것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할 때에는 자동차보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보관일자·보관기관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 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가 그

[본조신설 2012.2.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의 처리 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 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취소하고, 자동차보유자에게 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4.] 제2조(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6.1.22.>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지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요청하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업무 및 조정 업무 등의 처리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제3조(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1. 자동차등록번호 2.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면 「자동차관리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영치 해제에 따른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제6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는데 필요한 항목 제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별지 제3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조(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보험회사 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③ 삭제 <2009.2.6.> ④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관리 및 개선 2. 의무보험 관련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보급 및 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5. 12.22., 2016.12.30.>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정보를 말한다) 1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1의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정보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1. 자동차등록번호 2.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는데 필요한 항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2.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명령의 현황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제37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건설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 판 등의 영치 또는 보관 관련 정보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의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 5의2.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지급의 관리·운용 내용 6.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분담금의 수납·관리 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7.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내용 8.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현황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정보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9조(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 등”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청구 절차) ① 법 제10조제1	제5조(보험금등 신출 기초의 증명서류) 영 제7조제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기에 해당 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6.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7. 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출 기초를 적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	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 서류”란 치료비의 명세별로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 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3.3.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 기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금등과 가불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등이 부담한다. 제8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① 보험회사등은 피해자에게 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의 청구와 별 제11조에 따른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4.12.30.> 제10조(가불금액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20. 2. 25.> 1. 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2.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내용별 한도금액 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보험회사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2.> 1.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책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날부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조(보험회사등에 대한 가불금)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6.12.20.>	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보험회사등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여 받은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조사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같은 법 제77조 및 「재산조사회규칙」 제13조에 따라 재산조회 결과를 출력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4.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채무자 회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③ 삭제 <2016. 12. 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2.6.>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	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하는 통지는 서류, 팩스, 전자파일, 그 밖의 문서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통지 및 철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6조(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① 보험회사 등이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기한을 넘겨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2.5.> ② 삭제 <2014.2.5.> [제목개정 2014.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 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 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 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 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③ 삭제 <2015.6.22.> ④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본조신설 2012.2.22.]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5.> [본조신설 2012.8.22.] 제16조의2(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① 보험회사 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해당 보험회사등에 청구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9.4.] 제6조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지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청구받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2.5.]	인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4.] 제6조의4(이의제기 등)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13조(임원환자의 관리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임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	제12조(임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관리) ① 의료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임원환자”라 한다)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계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7.>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4.2.7.> [본조신설 2012.9.4., [제목개정 2014.2.7.] 제6조의5(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9.4.]
제13조(임원환자의 관리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임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	제12조(임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관리) ① 의료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임원환자”라 한다)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제6조의6(임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제한 보험회사등은 임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2012.8.22., 2014. 2.5.> 1.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2. 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 3. 의료기관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외박 및 귀원(歸院) 일시 ②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에는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나 그 보호자,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의료인(「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귀원을 확인한 의료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③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이 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 책임자가 촬영 일시 및 그 이름을 적고, 서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13조의2(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① 의 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 치 등의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퇴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생활 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와 제12 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와 일자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다른 의료 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지시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로부터 진료기록, 임상 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 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12조의2(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① 법 제13조의 2제1항에서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 료를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결과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필요하 지 않아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제2항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다른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치과병원·한방병 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상급종합병원, 중 합병원 및 병원 등을 제외한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중 합병원(이하 “중합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	중인 교통사고환자: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 및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3.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본조신설 2009.12.31.]	
제12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	제12조의3(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①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경찰관서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은 국가경찰공무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으로 한다.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장소 및 원인 2. 교통사고 유형 및 피해상황 3.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여부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예정일 7일 전까지 열람청구서에 열람사유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요청을 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9조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⑦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5항 및 제6항에	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청구를 받은 경찰관서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방법, 열람장소 및 열람범위 등을 정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2.] 제12조의4(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제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 교통법규 위반 일시 및 위반 항목 2. 운전면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 운전면허의 범위, 정지 또는 취소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9. 11. 26.> ⑧ 보험회사등,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2019. 11. 26.>	및 정지기간 또는 취소일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제공 목적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4조의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②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회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3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에 걸리는 표준작업시간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산정방법 3. 삭제 <2014.2.7.>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지급하는 「의료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한다)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간당 공임(工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용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할 때에 정비용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조사·연구의 세부 범위, 조사·연구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건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제14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명은 보험회사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심의회는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의 분담금액, 분담방법,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 조 신설 2015.12.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18조(운영비용)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용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삭제 <2013.8.6.> ③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6.> ④ 삭제 <2013.8.6.> ⑤ 삭제 <2013.8.6.> ⑥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제16조의2(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20조(심사·결정 절차 등)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거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심사 청구 사건이 자동차보험진료수거기준에 따라 심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심사·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다. <개정 2013.3.23.>	사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21조(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수탁 의사를 표시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당사자 간에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22조(심의회의 권한)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등·의료기관·보험사업자단체 또는 의료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자에게 진단 또는 검안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심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2.]		
제23조(위법 사실의 통보 등) 심의회는 심사 청구 사건의 심사나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할 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23조의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 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제17조(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	제8조(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3. 청약자가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이 명백한 경우	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5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11.28.>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録)을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제9조(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법 제25조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론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계약에 관한 계약에서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 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 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7.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①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그 승계 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승계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양수인은 보험회사등에게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공제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8조(사전협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책임보험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작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22.]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 11.28.>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제18조 삭제 <2020.2.25.>	제10조(구상금액) 별 제2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8.>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2. 재물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의 경우: 사고 1건당 1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그 변경 내용이 보험가입자 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등에게 변경된 보험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 등을 변경된 보험금 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2. 그 밖에 보험금 등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개정 2013.8.6.>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	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 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후유장애(重症後遺障礙)의 유자(遺子)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6.3.22.>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보상의 절차 등) ①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4항에서 같다)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항과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법 제30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1. 경찰청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보험요율산출기관 ④ 정부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개정 2012.2.22.>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6. 청구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그 사고가 별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별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피해자가 별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별 제10조 및 별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아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⑦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5항 및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수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 2.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4.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5.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6. 청구요건(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7. 청구금액 및 그 산출 기초 ⑧ 제7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2.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 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 7.>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2. 8.22.>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의 상속인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피해원인, 피해현황 및 피해정도에 관한 사항 3. 가해차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8.22.] 제23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개정 2009.12.31., 2013.3.23.〉 1. 제21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의 세부 기준 2.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생활자금의 대출 및 그 상환, 장학금의 지급 또는 자립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금액 4. 제27조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6.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3. 그 밖에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등의 개발·보급	제23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에 관한 통계 및 자료의 수집·관리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관련한 시범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및 선도사업의 시행·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2.5.]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조(재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의료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2. 의료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②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2016.3.22.> 1. 의료재활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직업재활사업(직업재활상담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6.12.20.> ③ 재활시설의 용도로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건축물, 토지,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와 설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6.3.22.]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1. 직업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2.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거편의·상담·훈련 등 서비스의 소개 ③ 삭제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 27., 2013.3.23., 2015.6. 22.>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① 삭제 <2009.9.3.>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재단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1. 의료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사업: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2. 직업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나.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서 재활시	제26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① 별 제32조제2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2010.5.4., 2011.1.24., 2013.3.23.> 1. 정관 2.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등 계획서(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내부 규정 1부 4. 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나.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④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절차 및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다. 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 진료실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활시설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23.> 제27조(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①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현황(임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수입 및 지출현황 4. 재할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할시설운영자의 전 분기 재할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실적 및 재할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분기의 재할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재할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할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4. 장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장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해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재활시설이 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가 지정될 때까지 그 기간 및 관리·운영조건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계속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재활시설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3.3.23.> 1. 지정취소일부터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 2. 계속하여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제2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 계속된 업무가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2년 이내에는 재활시설운영자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제34조(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①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재활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시설과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9.2.8.>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후유장애인 재활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8명 이내 가.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인복지 또는 재활관련 분야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의료·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교통·의료·건축·장애인복지 분야의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마. 언론인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사. 그 밖에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인복지 또는 재향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전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 7. 4.> 제2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2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8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35조(준용)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보험금 등”은 “보상금”으로 본다. 〈개정 2009.2.6.〉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본다.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① 정부 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5. 11. 20., 2018. 9.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 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정부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2. 「근인연금법」(같은 법 제6조제13호·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요양비만 해당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만 해당한다) 6. 「근로기준법」 7. 「국민건강보험법」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	제30조(분담금의 납부자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란 제5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보유자와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보	제11조(분담금액)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책임보험의 보험료(책임공제에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8.11.13., 2013.3.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할 자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등이 해당 납부 의무자와 계약을 체결 할 때에 징수하여 정부에 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④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제목개정 2013.8.6.]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협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보유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31조(분담금액)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 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2항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책임보험료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 31., 2013.3.23.,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개정 2013.3.23., 2016.12.30.〉 제32조(분담금의 납부 등)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징수 명세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손해배상 보장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2016.12.30.〉 1. 분담금의 징수·관리 2. 보상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대위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상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09.12.31.> ⑤ 삭제 <2009.12.31.> ⑥ 삭제 <2009.12.31.> ⑦ 삭제 <2009.12.31.> 제32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별 제37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분담금은 별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별 제37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할 자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38조(분담금의 체납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담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부를 독촉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① 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2.22.>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상사업 채권청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의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9.2.6.> 1.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그 밖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3.23.,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2(채권의 결손처분) ① 법 제39조제3항 제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이하 “구상금 등”이라 한다)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에 그 밖에 구상금등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한 경우 ② 정부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하거나 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경우 연도별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사고내용·지급금액,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사유·의결일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39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3(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채권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지명받은 사람과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이하 “분담금관리자”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에서 분담금관리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에서 「보험업법」 제4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2호다목의 자동차보험(이하 “자동차보험”이라 한다)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자동차보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삭제 <2015.12.31.>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4(채권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3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총선 제33조의4는 제33조의5로 이동 <‘15.12.31.’] 제33조의5(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 또는 그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채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그 위원은 해당 안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채권정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채권정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이 안전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5는 제33조의6으로 이동 <‘15.12.31.’>] 제33조의6(채권정리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채권정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채권정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제5항·제6항 및 제33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채권관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6은 제33조의7로 이동 <‘15.12.31.’>] 제33조의7(채권관리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채권관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7은 제33조의8로 이동 <‘15.12.31.’>] 제33조의8(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요청 등) 국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교통부장관은 채권정리위원회에 구상금등의 결손처분에 대한 심의 요청을 위하여 법 제 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법 제 30조제1항의 보상업무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보장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와 법 제 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 받은 보험 관련 단체(이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라 한다)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사업자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8은 제33조의9로 이동 <’15.12.31.>]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설 2015.6.22.>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① 국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39조의4(업무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항의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추진 지원 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5.6.22.]		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매년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교육 및 홍보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관리 3.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정책 연구 지원 4. 그 밖에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39조의5(임원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원장 1명,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원장,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9명 이내로 한다. ⑦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11조의3(이사회)의 구성) ① 별 제39조의5제5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원장 1명, 이사 8명(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이사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공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금융·보험·법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교통·금융·보험·법률 관련 분야에서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 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11조의4(이사회 운영)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이 이사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 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가 소집 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장이 주재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39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아닌 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6.22.]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39조의7(재원)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검사 업무 이외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제1항에 따른 수입금 2. 제2항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제33조의9(수입금의 관리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39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수입금을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관리계획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33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9는 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33조의10으로 이동 <2015. 12. 31.>	
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등으로 인한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제39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6.22.]		
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제6장의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신설 2016.12.20.>		
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용도에 사용한다. -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 · 운영 -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 제30조제4항에 따른 미반환 기불금의 보상 -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에 방사업 -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 의 관리·운영 -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 -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 -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 조사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14. 분담금의 수납·관리 등 기금의 조성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6.12.20.]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39조의13(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3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33조의10(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별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별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총선 제33조의10은 제33조의12로 이동 (20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12.30.}> 제33조의11(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보험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7장 보칙 <개정 2015.6.22.>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9. 2.6.>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은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허가·검사·해제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27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또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영치(領置)된 자동차		제12조(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 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9.4.> 1. 해당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등록번호판을 해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2014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구상금액: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43조(검사·질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재할시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3.8.6.>	제34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질문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9.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1. 이 법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 상황에 관한 장부 등 서류의 검사 2.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행위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처리 상황을 파악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23.〉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재확시살은영자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43조의2(포상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동차 또는 운전자를 목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포상금은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됨으로써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 절약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 20.〉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제33조의12(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란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는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23.〉 1.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 2. 신고 또는 고발의 내용 3. 피해자의 인적사항 4. 피해자의 피해정도 5. 그 밖에 검거된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전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피해자가 사망한 신고 또는 고발의 경우: 100만원 2. 피해자가 부상한 신고 또는 고발의 경우: 50만원부터 8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2.]	⑥ 제5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23.>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8.22.], [제33조의10에서 이동 <2016.12.30.>]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2.]	제33조의13(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2.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동 또는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차량 스스로 제동 또는 제어하는 장치 3. 자동차의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운전자의 시계(視界)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4. 그 밖에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 하는 장치 [본조신설 2016.12.30.]	
제4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라 의무보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의 처리 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의무보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0., 2019. 11. 26.> -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를 보험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가 가지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업무 및 조정 업무 등의 처리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제34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질문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9.3.]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0., 2019. 11. 26.> -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를 보험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가 가지	제3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31., 2012. 8. 22., 2013. 3. 23., 20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5. 채권관리위원회의 안전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의 조사·검증 등의 업무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와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	2. 25.> 1. 최근 3년간 재산상항 및 수입과 지출의 전망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설치된 한 곳 이상의 상설 보상조직 및 그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2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9. 2. 8.>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설치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 22.,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의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10.2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가 지급할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9.2.6., 2013.8.6.> ⑧ 삭제 <2016.12.20.> ⑨ 삭제 <2016.12.20.>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관한 업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제6조제2항에 따른 가입관리 전산망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한국의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4. 2. 5., 2019. 2. 8.>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3. 23., 2014. 2. 5., 2016. 12. 30.> 1. 업무의 처리상황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2. 삭제 <2016. 12. 30.>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제35조의2 삭제 <2016.12.30.> 제35조의3(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법 제45조의 2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보장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자동차 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다만, 보장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2. 분담금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분담금관리자가 분담금의 수납·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09.12.31.] 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 23., 2016.12.30.> 1. 법 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의 보상, 반환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유장애인 등의 재할 지원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9조의13제2항 및 제45조제1항·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1.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및 분담금 징수·관리,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질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 7.> ⑦ 심의회는 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 7.> [본조신설 2012.8.22.]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 1.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등: 2014년 1월 1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45조의2(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보제공 대상자,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정보를 요청한 자, 제공 목적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2014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가불금액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 3. 3.> 5. 제25조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액의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45조의2(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보제공 대상자,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정보를 요청한 자, 제공 목적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보장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자동차 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다만, 보장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손해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본조신설 2009.2.6.]	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2. 분담금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분담금관리자가 분담금의 수납·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09.12.31.]	
제45조의3(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과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2.6.]		
제8장 벌칙 <개정 2015.6.22.>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별급에 처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1.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유자 ③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48조(과태료) ① 삭제 <2013.8.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4.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회사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3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상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6.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2.6., 2015.6.22.> 제49조 삭제 <2009.2.6.>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개정 2015.6.22.>		
제50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46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무보험에	제37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13조(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22.>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해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1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개정 2012.2.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8조(범칙자의 범위) ①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제38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에 관한 정보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사법경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2.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2.8.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51조(통고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죄금 납부통고서로 범죄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죄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죄금의 액수는 치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제2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통고처분의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범죄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금 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 범죄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규,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죄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범죄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상)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범죄금 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책의 범죄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상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2조(범죄금의 납부) ① 제51조에 따라 범죄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범죄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죄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범죄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		제15조(범죄금의 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죄금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4.>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에 내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2. 2.22.>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확인통지서를 받았으면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에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제53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사범경찰관리(「사범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사범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4.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익을 제기한 경우		
부칙 <제12021호, 2013.8.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87호, 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4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77호, 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호 정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149호, 201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지연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보험회사등이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0호, 20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환자 외출 또는 외박의 기록·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임원환 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 규칙 시행 후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의제기를 받아 이 규칙 시행 후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부칙 <제14092호, 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50호, 2016.12.20.>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8호, 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부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부칙 <제25940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별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자 중 2016년 4월 1일 이후까지 유효한 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자는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보험 등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26659호, 2015.11.2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경우에는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6호, 2015.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0호, 2016.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35호, 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3>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83호, 2015.11.30.>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6751호, 2015.12.22.>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44호, 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43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32조의2, 제33조의13 및 제35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3일 이후 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80호, 2018. 9. 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㉞부터 ㉟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518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⑫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35호, 2019.11.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⑬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335호, 2020.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85호, 2020. 2. 25.>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 제18조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7. 이전 부칙은 생략

-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으므로 무단으로 복사·복제할 수 없습니다.
- 동 책자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법령 및 관련규정 등 변경사항은 법제처 또는 관련 법령, 규정 소관부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발 행 월 : 2020년 5월
 - 발 행 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발 행 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 대표전화 : 1644-2000
 - 인 쇄 처 : 지성프린팅 / 033) 765-2490~1
-